

제331회국회  
(임시회)

#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제 3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5년3월2일(월)

장 소 환경노동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국립공원공단법안
6.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2.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3.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4.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5.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 수도권법 일부개정법률안
1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9.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3.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4.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5.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7. 지속가능발전법 폐지법률안
28.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29.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0.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31.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안
3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33.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34.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35.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6.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7.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8.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4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4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4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4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47.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8.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49.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50.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51.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5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5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54.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55.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56.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57.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5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59.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60.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4.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65.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6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6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6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6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70.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
71.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
72.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
7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7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7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76.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7.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8.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79.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80.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1.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2.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

**심사된 안건**

-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 · 양승조 · 안민석 · 박광운 · 김민기 · 김윤덕 · 신학용 · 강동원 · 백재현 · 김광진 의원 발의) ..... 6
- 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7
- 5. 국립공원공단법안(정부 제출) ..... 7
- 6.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권성동 · 김재원 · 김진태 · 정문헌 · 유승우 · 이완영 · 홍철호 · 송영근 · 김한표 · 황인자 의원 발의) ..... 7
- 7.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7
- 8.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박덕흠 · 송광호 · 강기윤 · 김기선 · 이종배 · 이완영 · 신성범 · 이만우 · 강석훈 · 홍문표 의원 발의) ..... 7
- 9.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7
- 10.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7
- 1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양창영 의원 대표발의)(양창영 · 최봉홍 · 박창식 · 이우현 · 은수미 · 신성범 · 김정록 · 정문헌 · 주영순 · 이종진 · 황영철 의원 발의) ..... 7
- 12.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 · 정청래 · 이개호 · 주승용 · 강기정 · 박민수 · 부좌현 · 이원욱 · 백재현 · 오영식 의원 발의) ..... 7
- 13.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주호영 · 정문헌 · 안덕수 · 김희국 · 김도읍 · 이에리사 · 서상기 · 김장실 · 이상일 · 홍지만 · 정두언 · 홍철호 · 김광립 · 김제식 · 김상훈 의원 발의) ..... 7
- 14.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7
- 15.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권성동 · 김재원 · 김진태 · 정문헌 · 유승우 · 이완영 · 홍철호 · 송영근 · 김한표 · 황인자 의원 발의) ..... 7
- 16. 수도권 일부개정법률안(양창영 의원 대표발의)(양창영 · 정문헌 · 최봉홍 · 박명재 · 박창식 · 경대수 · 이우현 · 이자스민 · 황영철 · 김정록 · 권성동 · 은수미 · 조현룡 의원 발의) ..... 7
- 1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민 의원 대표발의)(김상민 · 이만우 · 김을동 · 이완영 · 문정립 · 주영순 · 서용교 · 홍지만 · 이한성 · 박윤욱 의원 발의) ..... 7
- 18.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 의원 대표발의)(부좌현 · 이개호 · 도종환 · 정청래 · 김우남 · 김성곤 · 이목희 · 박민수 · 박남춘 · 김현 의원 발의) ..... 7
- 19.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하나 의원 대표발의)(장하나 · 김광진 · 김우남 · 김제남 · 박남춘 · 박민수 · 안민석 · 은수미 · 이인영 · 전순옥 · 정성호 · 최동익 의원 발의) ..... 7
- 20.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권성동 · 송영근 · 김진태 · 김을동 · 홍지만 · 김희선 · 정수성 · 이운룡 · 정문헌 · 강기윤 · 이강후 의원 발의) ..... 7
- 21. 영산강 ·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7
- 22.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 · 김우남 · 박민수 · 부좌현 · 이개호 · 이목희 · 임수경 · 정성호 · 정호준 · 주승용 의원 발의) ..... 7
- 23.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권성동 · 김재원 · 김진태 · 정문헌 · 유승우 · 이완영 · 홍철호 · 송영근 · 김한표 · 황인자 의원 발의) ..... 7
- 24.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록 의원 대표발의)(김영록 · 김성곤 · 김승남 · 박주선 · 송호창 ·

유성엽 · 이개호 · 이종걸 · 최규성 · 추미애 의원 발의) .....	7
25.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7
2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권성동 · 송영근 · 김진태 · 김을동 · 홍지만 · 김희선 · 정수성 · 이운룡 · 정문헌 · 강기윤 의원 발의) .....	7
27. 지속가능발전법 폐지법률안(김기준 의원 대표발의)(김기준 · 한명숙 · 이미경 · 김경협 · 우원식 · 이종걸 · 이상직 · 신학용 · 이학영 · 최민희 · 장하나 의원 발의) .....	7
28.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배덕광 · 김성찬 · 이종배 · 김용남 · 최봉홍 · 박윤옥 · 이종진 · 윤명희 · 조명철 · 송영근 의원 발의) .....	7
29.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8
30.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권성동 · 김재원 · 김진태 · 정문헌 · 유승우 · 이완영 · 홍철호 · 송영근 · 김한표 · 황인자 의원 발의) .....	8
31.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안(주영순 의원 대표발의)(주영순 · 나성린 · 양창영 · 최봉홍 · 서용교 · 김종태 · 이완영 · 이자스민 · 김상민 · 이종훈 · 한정애 · 김용남 · 심상정 · 이인영 · 권성동 의원 발의) .....	8
3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황인자 의원 대표발의)(황인자 · 손인춘 · 노철래 · 정희수 · 박윤옥 · 이자스민 · 이완영 · 윤상현 · 이에리사 · 홍문표 의원 발의) .....	8
33.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권성동 · 양창영 · 송영근 · 김진태 · 김을동 · 김재경 · 홍지만 · 김희선 · 정수성 · 이운룡 · 정문헌 · 강기윤 의원 발의) .....	8
34.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8
35. 환경분야 시험 ·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권성동 · 양창영 · 송영근 · 김진태 · 김을동 · 홍지만 · 김희선 · 정수성 · 이운룡 · 정문헌 · 강기윤 의원 발의) .....	8
36.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박덕흠 · 송광호 · 강기윤 · 김기선 · 이종배 · 이완영 · 신성범 · 이만우 · 강석훈 · 홍문표 의원 발의) .....	8
37.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8
38.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 · 이인영 · 안규백 · 박광온 · 이윤석 · 부좌현 · 배재정 · 송호창 · 장하나 · 한명숙 · 유은혜 · 은수미 · 김관영 · 한정애 · 김동철 의원 발의) .....	8
3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록 의원 대표발의)(김정록 · 이재영 · 전하진 · 황인자 · 이만우 · 박윤옥 · 김명연 · 김제식 · 윤명희 · 양창영 의원 발의) .....	8
4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2068) .....	8
4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3486) .....	8
4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주 의원 대표발의)(민병주 · 김상훈 · 김성찬 · 김태원 · 김한표 · 박창식 · 서상기 · 손인춘 · 송영근 · 이병석 · 전하진 · 조명철 의원 발의) .....	8
4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 · 전순옥 · 이인영 · 이학영 · 윤관석 · 은수미 · 박홍근 · 배재정 · 장하나 · 장병완 · 김현미 · 이미경 · 김상희 의원 발의) .....	8
4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최봉홍 의원 대표발의)(최봉홍 · 양창영 · 이만우 · 민현주 · 김성태 · 정희수 · 박창식 · 박대동 · 이상일 · 이종훈 의원 발의) .....	8
4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 · 김윤덕 · 강기정 · 조정식 · 이개호 · 안민석 · 백재현 · 신경민 · 강동원 · 김성곤 의원 발의) .....	8
4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8
47.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 · 이인영 · 안규백 · 박광온 · 이윤석 · 부좌현 · 배재정 · 송호창 · 장하나 · 한명숙 · 유은혜 · 은	

수미·김관영·한정애·김동철 의원 발의) ..... 8

48.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재정 의원 대표발의)(배재정·윤관석·박홍근·도종환·유기  
홍·이개호·박주선·이찬열·정진후·오영식·신경민·우원식·안민석·설훈·심상정·權垠希  
·박남춘·장하나·홍의락·유은혜 의원 발의) ..... 8

49.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박명재·이강후·이한성·이종진·박윤옥  
·홍철호·이상규·김미희·김기선·황진하·김광립·강길부·김태원·김상훈 의원 발의) ..... 8

50.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8

51.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김윤덕·백재현·변재일·박홍  
근·황주홍·김광진·신경민·김태년·조정식 의원 발의) ..... 8

5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전순옥·이인영·이학영·윤관석·  
은수미·박홍근·배재정·장하나·장병완·김현미·이미경·김상희 의원 발의) ..... 9

5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홍영표·김영록·심상정·이윤석·김경협·  
이목희·안규백·이인영·전순옥·조정식·장하나 의원 발의) ..... 9

54.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남 의원 대표발의)(김용남·황영철·김종태·송영근·홍철  
호·주영순·최봉홍·권성동·배덕광·문대성 의원 발의) ..... 9

55.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이인영·안규백·박광온·이윤  
석·부좌현·배재정·송호창·장하나·한명숙·유은혜·은수미·김관영·한정애·김동철 의원  
발의) ..... 9

56.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이인영·안규백·박광온  
·이윤석·부좌현·배재정·송호창·장하나·한명숙·유은혜·은수미·김관영·한정애·김동철  
의원 발의) ..... 9

57.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권성동·정문헌·유승우·홍철호  
·송영근·김한표·황인자·이이재·김재경·김을동 의원 발의) ..... 9

5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전순옥·이인영·이학영  
·윤관석·은수미·박홍근·배재정·장하나·장병완·김현미·이미경·김상희 의원 발의) ..... 9

59.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권성동·홍철호·유승우·정문헌  
·황인자·이이재·김재경·박덕흠·송영근·김재원 의원 발의) ..... 9

60.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이인영·  
박원석·이개호·전순옥·이찬열·이학영·최규성·김성곤·한명숙·이석현·우원식·홍영표·  
최동익·노영민·홍의락·유은혜·인재근·은수미·장하나·김기준·한정애·정성호·김태년 의  
원 발의) ..... 9

6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현주 의원 대표발의)(민현주·  
김정록·김한표·이만우·최봉홍·심상정·권성동·박윤옥·양승조·이자스민 의원 발의) ..... 9

6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  
·이인영·안규백·박광온·이윤석·부좌현·배재정·송호창·장하나·한명숙·유은혜·은수미  
·김관영·한정애·김동철 의원 발의) ..... 9

6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9

64.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김윤덕·박주선·강동원·김  
경협·부좌현·김성곤·변재일·조정식·윤호중 의원 발의) ..... 9

65.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김우남·주승용·강기정·서영교·양  
승조·유성엽·김춘진·정우택·부좌현·김영록·최규성·박민수·김성곤 의원 발의) ..... 9

6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권성동·김재원·김진태·정문헌·유승  
우·홍철호·송영근·황인자·이이재·김재경 의원 발의) ..... 9

6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이인영·인재근·송호창·우원식·임수

경·박홍근·김용익·최원식·이원욱·한명숙·이목희·오영식·장하나·전순옥·박남춘·최민희 의원 발의) ..... 9

6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김기선·김현숙·신경림·박윤옥·이종진·김제식·김을동·이목희·김정록 의원 발의) ..... 9

6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최봉홍 의원 대표발의)(최봉홍·이만우·민현주·김성태·주영순·정희수·박창식·윤명희·이상일·이종훈 의원 발의) ..... 9

70.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 ..... 9

71.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이인영·박원석·이개호·전순옥·이찬열·이학영·최규성·김성곤·한명숙·이석현·우원식·홍영표·최동익·노영민·홍의락·유은혜·인재근·은수미·장하나·김기준·한정애·정성호·김태년 의원 발의) ..... 9

72.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0

7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자스민 의원 대표발의)(이자스민·이한성·윤명희·홍철호·박윤옥·유승민·조명철·이에리사·이완영·김태흠 의원 발의) ..... 10

7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이인영·안규백·박광온·이윤석·부좌현·배재정·송호창·장하나·한명숙·유은혜·은수미·김관영·한정애·김동철 의원 발의) ..... 10

7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0

76.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0

77.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장병완·이개호·박민수·김승남·박남춘·서기호·강기정·조정식·김영록·김동철 의원 발의) ..... 10

78.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 의원 대표발의)(김광진·남인순·노영민·박남춘·박민수·박홍근·유기홍·임수경·정성호·최민희 의원 발의) ..... 10

79.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0

80.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이인영·박원석·이개호·전순옥·이찬열·이학영·최규성·김성곤·한명숙·이석현·우원식·홍영표·최동익·노영민·홍의락·유은혜·인재근·은수미·장하나·김기준·한정애·정성호·김태년 의원 발의)(의안번호 12100) ..... 10

81.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이인영·인재근·송호창·우원식·임수경·박홍근·김용익·최원식·이원욱·한명숙·이목희·오영식·장하나·전순옥·박남춘·최민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12664) ..... 10

82.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 ..... 26

(14시57분 개의)

○위원장 김영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서 오늘 공청회에 배석하신 분들이나 발표자 여러분들께 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시 반부터 소회의실에서 법안소위를 개최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간이 좀 늦어짐으로 회의 진행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 양해를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2월 임시국회에 있어서

우리 위원회의 마지막 회의입니다.

지난 회의에서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소관 2015년도 업무보고를 들은 데 이어서 오늘은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한 다음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소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다소 의견 차이가 있어서 다음에 상정하도록 하였습니다.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

- 열 · 양승조 · 안민석 · 박광온 · 김민기 · 김윤덕 · 신학용 · 강동원 · 백재현 · 김광진 의원 발의)
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5. **국립공원공단법안**(정부 제출)
  6.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권성동 · 김재원 · 김진태 · 정문현 · 유승우 · 이완영 · 홍철호 · 송영근 · 김한표 · 황인자 의원 발의)
  7.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8.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박덕흠 · 송광호 · 강기윤 · 김기선 · 이종배 · 이완영 · 신성범 · 이만우 · 강석훈 · 홍문표 의원 발의)
  9.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0.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양창영 의원 대표발의)(양창영 · 최봉홍 · 박창식 · 이우현 · 은수미 · 신성범 · 김정록 · 정문현 · 주영순 · 이종진 · 황영철 의원 발의)
  12.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 · 정청래 · 이개호 · 주승용 · 강기정 · 박민수 · 부좌현 · 이원욱 · 백재현 · 오영식 의원 발의)
  13.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주호영 · 정문현 · 안덕수 · 김희국 · 김도읍 · 이에리사 · 서상기 · 김장실 · 이상일 · 홍지만 · 정두언 · 홍철호 · 김광립 · 김제식 · 김상훈 의원 발의)
  14.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5.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권성동 · 김재원 · 김진태 · 정문현 · 유승우 · 이완영 · 홍철호 · 송영근 · 김한표 · 황인자 의원 발의)
  16.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양창영 의원 대표발의)(양창영 · 정문현 · 최봉홍 · 박명재 · 박창식 · 경대수 · 이우현 · 이자스민 · 황영철 · 김정록 · 권성동 · 은수미 · 조현룡 의원 발의)
  1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민 의원 대표발의)(김상민 · 이만우 · 김을동 · 이완영 · 문정립 · 주영순 · 서용교 · 홍지만 · 이한성 · 박윤옥 의원 발의)
  18.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 의원 대표발의)(부좌현 · 이개호 · 도종환 · 정청래 · 김우남 · 김성곤 · 이목희 · 박민수 · 박남춘 · 김현 의원 발의)
  19.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하나 의원 대표발의)(장하나 · 김광진 · 김우남 · 김제남 · 박남춘 · 박민수 · 안민석 · 은수미 · 이인영 · 전순옥 · 정성호 · 최동익 의원 발의)
  20.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권성동 · 송영근 · 김진태 · 김을동 · 홍지만 · 김희선 · 정수성 · 이운룡 · 정문현 · 강기윤 · 이강후 의원 발의)
  21. **영산강 ·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2.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 · 김우남 · 박민수 · 부좌현 · 이개호 · 이목희 · 임수경 · 정성호 · 정호준 · 주승용 의원 발의)
  23.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권성동 · 김재원 · 김진태 · 정문현 · 유승우 · 이완영 · 홍철호 · 송영근 · 김한표 · 황인자 의원 발의)
  24.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록 의원 대표발의)(김영록 · 김성곤 · 김승남 · 박주선 · 송호창 · 유성엽 · 이개호 · 이종걸 · 최규성 · 추미애 의원 발의)
  25.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권성동 · 송영근 · 김진태 · 김을동 · 홍지만 · 김희선 · 정수성 · 이운룡 · 정문현 · 강기윤 의원 발의)
  27. **지속가능발전법 폐지법률안**(김기준 의원 대표발의)(김기준 · 한명숙 · 이미경 · 김경협 · 우원식 · 이종걸 · 이상직 · 신학용 · 이학영 · 최민희 · 장하나 의원 발의)
  28.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

- 표발의)(배덕광·김성찬·이종배·김용남·최봉홍·박윤옥·이종진·윤명희·조명철·송영근 의원 발의)
29.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0.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권성동·김재원·김진태·정문현·유승우·이완영·홍철호·송영근·김한표·황인자 의원 발의)
31.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안**(주영순 의원 대표발의)(주영순·나성린·양창영·최봉홍·서용교·김종대·이완영·이자스민·김상민·이종훈·한정애·김용남·심상정·이인영·권성동 의원 발의)
3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황인자 의원 대표발의)(황인자·손인춘·노철래·정희수·박윤옥·이자스민·이완영·윤상현·이에리사·홍문표 의원 발의)
33.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권성동·양창영·송영근·김진태·김을동·김재경·홍지만·김희선·정수성·이운룡·정문현·강기윤 의원 발의)
34.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5.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권성동·양창영·송영근·김진태·김을동·홍지만·김희선·정수성·이운룡·정문현·강기윤 의원 발의)
36.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박덕흠·송광호·강기윤·김기선·이종배·이완영·신성범·이만우·강석훈·홍문표 의원 발의)
37.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8.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이인영·안규백·박광운·이윤석·부좌현·배재정·송호창·장하나·한명숙·유은혜·은수미·김관영·한정애·김동철 의원 발의)
3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록 의원 대표발의)(김정록·이재영·전하진·황인자·이만우·박윤옥·김명연·김제식·윤명희·양창영 의원 발의)
4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2068)
4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3486)
4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주 의원 대표발의)(민병주·김상훈·김성찬·김태원·김한표·박창식·서상기·손인춘·송영근·이병석·전하진·조명철 의원 발의)
4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전순옥·이인영·이학영·윤관석·은수미·박홍근·배재정·장하나·장병완·김현미·이미경·김상희 의원 발의)
4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최봉홍 의원 대표발의)(최봉홍·양창영·이만우·민현주·김성태·정희수·박창식·박대동·이상일·이종훈 의원 발의)
4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김윤덕·강기정·조정식·이개호·안민석·백재현·신경민·강동원·김성곤 의원 발의)
4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47.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이인영·안규백·박광운·이윤석·부좌현·배재정·송호창·장하나·한명숙·유은혜·은수미·김관영·한정애·김동철 의원 발의)
48.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재정 의원 대표발의)(배재정·윤관석·박홍근·도종환·유기홍·이개호·박주선·이찬열·정진후·오영식·신경민·우원식·안민석·설훈·심상정·權根希·박남춘·장하나·홍의락·유은혜 의원 발의)
49.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박명재·이강후·이한성·이종진·박윤옥·홍철호·이상규·김미희·김기선·황진하·김광림·강길부·김태원·김상훈 의원 발의)
50.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51.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김윤덕·백재현·변재일·박홍근·황주홍·김광진·신경민·김태년·조정식 의원 발의)



5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전순옥·이인영·이학영·윤관석·은수미·박홍근·배재정·장하나·장병완·김현미·이미경·김상희 의원 발의)
5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홍영표·김영록·심상정·이윤석·김경협·이목희·안규백·이인영·전순옥·조정식·장하나 의원 발의)
54.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남 의원 대표발의)(김용남·황영철·김종태·송영근·홍철호·주영순·최봉홍·권성동·배덕광·문대성 의원 발의)
55.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이인영·안규백·박광운·이윤석·부좌현·배재정·송호창·장하나·한명숙·유은혜·은수미·김관영·한정애·김동철 의원 발의)
56.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이인영·안규백·박광운·이윤석·부좌현·배재정·송호창·장하나·한명숙·유은혜·은수미·김관영·한정애·김동철 의원 발의)
57.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권성동·정문현·유승우·홍철호·송영근·김한표·황인자·이이재·김재경·김을동 의원 발의)
5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전순옥·이인영·이학영·윤관석·은수미·박홍근·배재정·장하나·장병완·김현미·이미경·김상희 의원 발의)
59.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권성동·홍철호·유승우·정문현·황인자·이이재·김재경·박덕흠·송영근·김재원 의원 발의)
60.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이인영·박원석·이개호·전순옥·이찬열·이학영·최규성·김성곤·한명숙·이석현·우원식·홍영표·최동익·노영민·홍의락·유은혜·인재근·은수미·장하나·김기준·한정애·정성호·김태년 의원 발의)
6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현주 의원 대표발의)(민현주·김정록·김한표·이만우·최봉홍·심상정·권성동·박윤옥·양승조·이자스민 의원 발의)
6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이인영·안규백·박광운·이윤석·부좌현·배재정·송호창·장하나·한명숙·유은혜·은수미·김관영·한정애·김동철 의원 발의)
6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64.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김윤덕·박주선·강동원·김경협·부좌현·김성곤·변재일·조정식·윤호중 의원 발의)
65.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김우남·주승용·강기정·서영교·양승조·유성엽·김춘진·정우택·부좌현·김영록·최규성·박민수·김성곤 의원 발의)
6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권성동·김재원·김진태·정문현·유승우·홍철호·송영근·황인자·이이재·김재경 의원 발의)
6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이인영·인재근·송호창·우원식·임수경·박홍근·김용익·최원식·이원욱·한명숙·이목희·오영식·장하나·전순옥·박남춘·최민희 의원 발의)
6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김기선·김현숙·신경립·박윤옥·이종진·김제식·김을동·이목희·김정록 의원 발의)
6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최봉홍 의원 대표발의)(최봉홍·이만우·민현주·김성태·주영순·정희수·박창식·윤명희·이상일·이종훈 의원 발의)
70.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
71.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이인영·박원석·이개호·전순옥·이찬열·이학영·최규성·김성곤·한명숙·이석현·우원식·홍영표·최동익·노영민·홍의락·유은혜·인재근·은수미·장하나·김기준·한정애·정성호·김태년 의원 발의)

- 72.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7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 법률안**(이자스민 의원 대표발의)(이자스민 · 이한성 · 윤명희 · 홍철호 · 박윤옥 · 유승민 · 조명철 · 이에리사 · 이완영 · 김태흠 의원 발의)
- 7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 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 · 이인영 · 안규백 · 박광운 · 이윤석 · 부좌현 · 배재정 · 송호창 · 장하나 · 한명숙 · 유은혜 · 은수미 · 김관영 · 한정애 · 김동철 의원 발의)
- 7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 법률안**(정부 제출)
- 76.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77.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장병완 · 이개호 · 박민수 · 김승남 · 박남춘 · 서기호 · 강기정 · 조정식 · 김영록 · 김동철 의원 발의)
- 78.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 의원 대표발의)(김광진 · 남인순 · 노영민 · 박남춘 · 박민수 · 박홍근 · 유기홍 · 임수경 · 정성호 · 최민희 의원 발의)
- 79.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80.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이인영 · 박원석 · 이개호 · 전순옥 · 이찬열 · 이학영 · 최규성 · 김성곤 · 한명숙 · 이석현 · 우원식 · 홍영표 · 최동익 · 노영민 · 홍의락 · 유은혜 · 인재근 · 은수미 · 장하나 · 김기준 · 한정애 · 정성호 · 김태년 의원 발의)(의안번호 12100)
- 81.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이인영 · 인재근 · 송호창 · 우원식 · 임수경 · 박홍근 · 김용익 · 최원식 · 이원욱 · 한명숙 · 이목희 · 오영식 · 장하나 · 전순옥 · 박남춘 · 최민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12664)

○**위원장 김영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이찬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81항 이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35건의 환경부 소관 법률안과 44건의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법률안 심사방법과 관련하여 먼저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소관으로 구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이어서 일괄하여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부장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 제7항, 제9항과 제10항, 제14항, 제21항, 제25항, 제29항, 제34항, 제37항 이상 11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존경하는 김영주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환경부 소관 법률안들이 상정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된 법률안들 중 정부가 제출한 11개 법률안들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계획 후개발 원칙에 따라 환경보전과 국토개발을 조화시킴으로써 지속 가능한 발전을 구현하고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환경계획과 국토계획을 수립할 때 계획 내용을 서로 연계하여 수립하도록 법제화 시키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국가환경종합계획과 국토종합계획의 수립주기를 일치시키는 한편 국토교통부 소관의 국토기본법도 같은 취지의 개정안이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상대적으로 확실한 배출권거래제와 자동차 온실가스·연비 기준 강화는 예정대로 시행하면서 친환경차를 더욱 역점 보급시켜 나가되 감축효과가 유동적이면서도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저탄소차협력금제도는 그 시행을 2021년으로 연기하려는 것입니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대상에 미세먼지와 오존을 추가하며 법 위반 사업장에 징벌적 성격으로 부과하던 총량초과부과금을 징벌 목적에 맞게 과징금으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안과 섬 지역 중 휴양객이 집중되나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을 공원해상휴양지구로 지정하여 법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숙박·편의시설 등의 설치를 계획적으로 허용하는 한편, 자연공원 보전에 지역주민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공원관리청이 토지소유자 등과 공원보호협

약을 체결하고 협약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원시설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고시 후 10년 이상 시행되지 않는 경우 계획은 그 효력을 잃도록 하는 등 자연공원을 보전하면서 지속 가능한 이용을 구현하려는 것입니다.

국립공원공단법 제정안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자연공원법 제44조로부터 제69조에 설립 근거 규정이 들어 있으나 공원을 보호·관리하기 위한 규제적 성격의 법률에서 이질적인 공단 조직 규정들을 분리하여 별도 조직법으로 제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하여 수동적 현장관리의 단속업무뿐만 아니라 생물종과 서식처 조사, 훼손된 생태계와 멸종위기종 복원, 탐방서비스 제공과 같은 능동적 기능도 수행토록 하는 한편, 1987년 설립 이후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국립공원 외에도 도립공원 등 다른 보호지역까지 수탁관리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자연환경보전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최대 출자자로서 설립한 법인이 발주하는 산업단지 개발 사업에도 순환골재 사용을 의무화하는 한편, 건설폐기물공제조합이 조합원에 고용된 자의 복지 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사업에 관한 규정을 정하려는 경우에도 일일이 환경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등의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 위해성 검사기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 수수료율로 대가를 받도록 규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환경부령으로 정한 범위 내에서 검사기관이 자율적으로 수수료율을 정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장에 의해 위해성 검사가 최적화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금강·낙동강·영산강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4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은 특정수질유해물질 감량계획 수립, 관거 관리, 폐수 재이용계획 수립,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들은 10여 년간 실행 사례가 극미하거나 또는 다른 법령에서 중복적으로 규율하고 있어 중복규제 해소 등 법률과 집행 현장 간의

괴리를 제거하려는 것입니다.

그간 이해 당사자와 전문가 그리고 관계부처와 충분히 논의하여 마련된 법안들이니만큼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주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24건의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안설명을 하겠다는 의원님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의 노트북 바탕화면에 있는 제안설명 폴더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4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37항까지 3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부 소관 법률안 35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찬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다른 시·군·구 지역에 대해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가축분뇨에 따른 악취 등으로 인한 자치단체 경계지역 주민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20% 이상 출자한 법인이 발주하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에 포함하여 순환골재의 재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국가 등의 출자비율 합을 초과하여 출자한 민간 출자자가 있는 경우에는 의무사용 건설공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한 단서조항의 삭제 여부에 대해서는 순환골재 의무사용 확대 측면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국립공원공단법안에 대

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안은 국립공원공단이 도립·군립공원까지 업무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공단 관련 규정을 자연공원법에서 분리하여 독립된 법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국립공원 관리를 통해 축적된 공단의 전문 업무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권성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개 법안은 모두 유사 명칭 사용금지 관련 개정안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3쪽 중간 부분입니다.

박덕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대강 수계법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5건의 개정안들은 상수원보호구역지정제도,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량 줄이기 계획 및 하수관로에 대한 정기검사제도 등을 폐지하고 대청호 특별대책구역에서 행위 제한을 일부 완화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절차 폐지와 관련해서는 동 제도의 지정실적이 없어 3대강 수계법 제정 당시의 목적과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고 수도법을 통해서도 지정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만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량 줄이기 계획은 당장 폐지하기보다는 특정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직접적인 기술지원 또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성과제고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양창영 의원님, 김동철 의원님께서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창영 의원님과 김동철 의원님 안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정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5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부안은 저탄소차협력금제도의 시행시기를 2021

년 1월 1일로 연기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생산량 기준이 세계 5위이고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유치국으로서 온실가스 감축의무 등에서 선도적 역할을 해야 되는 입장과 그리고 2015년도 예산안 심사 시에 제기된 부대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동 법안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주호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건축물 석면조사 의무대상 건축물에 소규모 어린이집을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소규모 어린이집의 영유아가 석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 및 석면안전진단지원사업 등에 대해서 법적 근거를 신설하도록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정부에서 제출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도 보고를 생략하고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양창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절수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 및 시설의 범위를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개정안은 법률의 명확성을 제고해서 당사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의미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에서 규정한 대상 건축물이 사실상 대부분의 신축건물 및 시설을 포함하도록 폭넓게 규정하고 있어서 법적 명확성과 법 집행의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김상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골프장의 농약 사용량 기준을 마련하고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동 개정안은 골프장의 농약 사용이 골프장 이용객 및 직원에게 어떠한 피해를 가하는지

에 대해서 정립된 조사결과가 없고 현행 농약안전 관리체계가 사용량이 아닌 사용시기 또는 횟수 등의 제한을 통해서 관리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부좌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하나 의원님, 권성동 의원님께서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하나 의원님 안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등을 시행하는 자가 그 사업장에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가 있으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이동조치명령 등을 하도록 보호제도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다만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보호제도와 개정안에 따른 보호제도가 각각 별도로 운영될 경우에는 중복 제도 운영에 따른 문제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권성동 의원님 안은 박제업 등록 및 벌칙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박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사람이 관련 장부를 관리토록 함으로써 박제업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려는 내용입니다.

동 개정안은 야생동물의 불법 포획 등에 관한 사후 관리를 위해서 환경부가 박제품을 제조하는 사람 등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 등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강창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만 이 부분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김영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록 의원님 안은 공원관리청이 자연보호특별보호구역 또는 임시출입통제구역을 지정하여 일정 기간 사람의 출입 등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민, 그 밖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임시출입통제구역 지정과 관련해서는 긴급한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거

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정부안입니다.

정부안은 10년이 지난 공원시설계획 결정의 실효 근거를 마련하고 자연공원 용도지구에 공원해상휴양지구를 신설하며 공원보호협약의 체결 근거 등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공원해상휴양지구 신설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관광을 활성화하고 난개발을 방지하려는 측면과 함께 규제 완화에 따른 환경·경관 등을 저해할 소지 및 과도한 지구 지정요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정책적 결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권성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재활용지정사업자 관리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취지는 타당하지만 정부가 제출한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안에서 동 제도를 이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만큼 추후 입법 경과를 보아 법안의 시행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김기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지속가능발전법 폐지법률안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배덕광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개인 배수설비 설치 시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과의 협의가 어려운 경우 신문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협의 없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동 개정안은 개인의 사유재산권 침해 가능성 그리고 개인하수도 및 공공하수도 간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주영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현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대한 독립적인 근거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개정안은 법률 제정의 필요성과 함께 현재보다 확대되는 것으로 규정된 사업범위 그리

고 상임위원 수 등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황인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만 이 부분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다음은 권성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성동 의원님 안은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민감한 계층의 활동공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어린이 활동공간 확인검사 이행명령제를 도입하며 어린이 활동공간 검사기관의 검사 수수료를 검사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사 수수료의 완전 자율화로 인한 부실검사·과도한 수수료 인상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자율화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정부안입니다.

정부안은 새로운 기술 및 물질의 적용 또는 사용제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만 동 규정은 개별 법령에서 새로운 물질 등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환경부가 규제를 할 수 없는 긴박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있어서도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생태계에 대한 위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규정이라는 점에서 삭제 여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권성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의 응시자격을 폐지하려는 것으로 취업기회 확대 및 자격증 활성화의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응시자격 폐지에 따른 숙련도 저하 우려, 유사 자격증의 응시자격 등을 감안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박덕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덕흠 의원님 안은 특별대책지역과 중복되는 오염물질총량규제지역에 대해서 특별대책지역의 행위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특별대책지역 및 오염물질총량규제의 규제

목적이 서로 다르고 개별법 및 관련 고시 개정으로도 행위제한 완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정부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할 때는 국토계획과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국토종합계획과 수립주기를 맞추기 위하여 국가환경 종합계획 수립주기를 10년에서 20년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만으로는 연동제의 구체적 이행을 담보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고 연동제의 세부사항을 환경부장관이 국토부장관과 협의하여 공동지침으로 정하도록 폭넓게 위임하고 있지만 향후 부처 간 조정을 거쳐 연동제의 세부사항을 추가적으로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국가환경종합계획은 2016년 재수립되는 반면에 국토종합계획은 2020년 재수립될 예정이므로 두 제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20년 계획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5년마다 국가환경종합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정비하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5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영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부터 제81항까지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인영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1항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새정치민주연합 서울 구로갑 국회의원 이인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제정법률안의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동 법률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한국사회를 경악케 했던 세월호 사태는 대한민국의 총체적 부실을 가장 극단적인 모습으

로 보여 주었습니다. 세월호 침몰의 핵심에 규제 완화, 외주화, 민영화와 함께 비정규직화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업무에 대해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거나 외주용역에 의한 인력을 사용하게 되면 해당 근로자는 낮은 소속감, 고용불안 등으로 사용자에게 그 업무의 안전문제를 소신껏 제기하기 어려우므로 공중의 생명·건강 등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는 직접고용에 의한 정규직근로자를 사용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철도·도시철도·항공운수사업 중 국민의 생명안전업무와 또 수도·전기·가스·석유사업의 운영 및 공급 관련 업무, 병원·혈액공급사업의 주요업무, 통신사업의 주요업무, 선박직원법에 따른 선박직원의 업무 등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과 관련한 업무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유해·위험 업무 등 근로자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생명안전업무로 규정하고 이 업무에는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및 외주용역근로자 사용을 금지하고 직접고용에 의한 정규직, 즉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사용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생명안전업무와 관련된 실태조사, 직업지도, 정보의 수집, 전담기관의 설치·운영을 하도록 하고 지도·조언, 시정조치, 보고와 검사, 자료요청 권한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여하는 등 생명안전업무 종사자를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확보를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법률을 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동 제정법률안이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용노동부장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0항과 제41항, 제46항, 제50항, 제63항, 제70항, 제72항, 제75항과 제76항, 제79항 이상 10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존경하는 김영주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부가 제출한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10건의 법률안을 제안설명 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현

장 중심으로 산업 수요에 맞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일학습병행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일학습병행제의 시행 직중, 교육훈련 기준과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의 요건 등을 정하였고 참여하는 학습근로자의 임금·휴게시간 등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교육을 이수한 후 평가에 합격하면 국가자격을 부여하고 사업주는 학습근로자를 일반근로자로 전환하여 다른 근로자와 차별 없이 동등한 처우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저임금 위반 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징역이나 벌금형에서 과태료 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수습근로자는 3개월까지 최저임금을 10% 감액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아르바이트 근로자에게까지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숙련 필요성이 낮은 업무는 최저임금을 전액 보장토록 하였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육아휴직’이라는 명칭을 ‘부모육아휴직’으로 변경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육아휴직 사용 후 잔여기간의 2배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현재의 3.0%에서 17년도 3.2%, 19년도 3.4%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그간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사업주는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토록 하였는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두 가지 서류를 통합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10년 동안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면 최대 3년간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보험료 체납 근절을 위하여 고용 및 산재보험료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을 체납액 10억 원 이상에서 5000만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을 위한 고용보험·국민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이 고액 재산 보유자에게까지 적용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제한하였습니다.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내에서 국제기능올림픽을 개최할 경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명 이상의 공인노무사가 합동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 운영규약을 고용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도한 규제로 보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광산사업주가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외에 고용부가 직접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중복 규제라는 지적이 있어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주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33건의 의원 발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위원님의 노트북 바탕화면에 있는 제안 설명 폴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33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8항부터 제81항까지 4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건 의사일정 제38항부터 제81항까지 총 44건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석현 의원님이 각각 대표발의한 제38항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47항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55항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56항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62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74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6건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수립주기 등을 정하고 이전 계획의 평가를 포함하며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 절차와 국회 보고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나 공청회 등의 도입은 현재에도 노사단체나 관련분야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부터 41항까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건 가운데 두 번째 제40항 정부안은 고액재산 및 소득보유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제한하기 위하여 정부가 개인의 자산 및

소득 정보를 타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라는 가치와 고액재산가에 대한 지원 방지라는 공익을 비교형량하여 도입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부터 46항까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 가운데 3쪽 제43항 위원님 안은 초단시간근로자에게 고용보험을 전면 적용하는 것으로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초단시간근로 형태에 따른 구직급여 적용 가능성과 고용시장 전체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도입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제44항 최봉홍 의원님 안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을 신고할 경우에 근로계약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서 작성물을 제고하려는 취지는 타당하나 근로계약을 제출하게 할 경우에 사업주가 고용보험 가입을 기피할 우려도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4쪽, 의사일정 제49항과 50항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가운데 제50항 정부안은 개업한 공인노무사 2명 이상이 합동사무소 설치시에 부여되고 있는 신고와 규약작성의무를 폐지하는 것으로 개업노무사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규제개혁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5쪽, 의사일정 제52항과 제53항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가운데 제52항 위원님 안은 초단시간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을 부여하려는 내용으로 휴게권을 장시간근로자와 동등하게 비례적으로 부여한다는 취지에서 타당성이 있으나 제도 운용 시 적용방식 등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5쪽 하단, 의사일정 54항 김용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사주 손실보전거래제도와 대여제도를 도입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시행하려는 것으로 우리사주의 장기보유를 유도함으로써 우리사주제도를 활성화하고 중소기업들에게도 공동의 근로복지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점에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권성동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능력중심사회 구축을 위하여 직업훈련체제를 개편하고 기능대학 운영을 합리화하며 기술교육대



학교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국가직무능력기준 규정 절차,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설립 근거,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구성 등에서 일부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과 59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가운데 제59항 권성동 의원안은 퇴직연금제도로의 단일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등을 도입하는 것으로 퇴직연금 확대를 통해 근로자의 지속적인 생활안정을 보장하고 기금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사업장 근로자에게도 퇴직급여제도의 혜택을 부여하는 점에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과 61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 가운데 제60항 이인영 의원님 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업무와 산업재해의 위험이 큰 업무에는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으로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나 고용형태 제한을 법제화하는 것은 입법영향평가와 의견수렴을 거쳐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제61항 민현주 의원님 안은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서면교부의 목적 및 행정비용 등을 고려하여 근로조건 서면교부의무 범위를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정부가 제출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을 최대 2년으로 연장하고 분할사용 횟수를 3회 이내로 확대하는 것으로 일·가정 양립을 위해 타당성이 있으나 기업의 부담 문제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의 의사일정 제66항과 67항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가운데 제66항 권성동 의원님 안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사업주를 보좌하여 안전보건업무를 수행하는 안전보건관리지원자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소규모 사업장의 자율안전보건관리체제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67항 이인영 의원님 안은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의 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완화하고 근로자대표의 작업중지권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려

는 취지는 타당하나 근로자대표의 작업중지권은 노사관계가 불안한 사업장 등에서 근로조건 개선의 수단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어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68항과 69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가운데 제69항 최봉홍 의원님 안은 출퇴근 시 재해를 통근재해로 보아 산재보험을 적용하려는 것으로, 근로자가 출퇴근 시 발생하는 재해를 명확히 보호하는 취지는 타당하나 재원 문제, 보험료 부담 주체, 민간의 자동차보험이나 손해보험 등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0쪽의 의사일정 제70항 정부가 제출한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 가운데 임금 지급 대상이 되는 학습근로시간에 사업장 외 교육훈련시간을 포함할지에 대하여는 의할 필요가 있으며, 정의규정·다른 법률과의 관계·제재규정 등 일부 법체계상 미흡한 조항에 대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71항 이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은 생명안전업무에는 원칙적으로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생명안전업무의 도급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바람직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규제 대상이 되는 업계의 반대를 고려하여 고용형태 제한 범위와 수준 또는 한계 등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11쪽의 의사일정 제73항과 75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가운데 제73항 이자스민 의원안은 공공기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그 점검 결과를 공표하려는 것으로서, 공표 대상을 민간기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2쪽의 의사일정 제79항 정부가 제출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단순노무종사자에게는 수습 시 감액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벌칙을 과태료로 개선하는 것으로, 수습감액 등을 이용하여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없애고 벌칙이 아닌 과태료로써 금전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3쪽 의사일정 제80항과 81항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 제80항

이인영 의원님 안은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 등에 대해서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파악하고 개정안의 영향을 평가한 후 파견금지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81항 이인영 의원님 안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파견근로자 직접고용의무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자 파견의 상용화·장기화에 미치는 영향, 기업회생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적용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44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영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7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현주 위원** 고용부장관님, 제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 의견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냈는데, 이 안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할 업무가 변경된 경우에 교부업무 의무사항을 갖다가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민현주 위원** 그런데 세 가지 이유로 해서 개정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지금 주셨는데, 그 의견 하나하나를 제가 다 짚어서 여쭙 보기 전에 그냥 딱 한 가지로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가 중간에 변경되고 이동하고 장소가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 단시간근로자에게 고지를 하는 것을 제도화하는 것, 문서로 남기는 게 고용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번거로운 일인가요? 불필요한 일인가요?

계약 당시에 한 번 고지를 하지요,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민현주 위원** 근로계약서에 다 기입을 해서 서

명을 하는데, 그 이후에 중간에 업무가 변경되거나 장소가 이동되거나 시간이 변경됐을 경우에 해당 근로자에게 그것을 갖다가 고지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서면고지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번거로운 일인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런 취지에서 번거롭다고 보는 것이 아니고요. 기간제법에서 정하는 부분은,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 정하지 않은 부분을 기간제법에서 정하는 것이 옳고,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 대해서 중간에 일하는 방식이나 이런 근로조건에 대해서 큰 변화가 있을 때는 그것을 다시 고지하고 필요하면 본인이 신청했을 경우에는 서면고지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 종합적으로 적용이 된다 그런 취지에서 아마……

○**민현주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근로기준법에 적용돼 있지 않은 부분을 이 법에서만 규정하는 것은……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다 커버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별도의 규정을 아니 하여도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민현주 위원** 법체계 정비상 이 법에도 조항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지 않나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렇게 되면 분명히 한다는 취지는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도 기간제법에 또 두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근로기준법 적용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근로기준법으로 놔두고, 기간제 특성과 연관돼 있는 부분을 기간제법에 넣는 것이 법체계상 일관성이 있어 보여서 그런 의견을 냈던 것 같습니다.

○**민현주 위원** 그러니까 어떤 조항도 중복돼서 두 가지에 다 들어가는 경우는 없었나요, 이때까지 법조항이?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대부분 그런 조항은 좀 피하는 걸로 했습니다, 기간제법에서.

○**민현주 위원** 자주 변경되는, 특히나 근로기준법에서…… 정규직이나 장기고용근로자들에게는 많이 일어나지 않지만 단시간근로자들에게는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라서 특별히 이 규정을 갖다가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신 건가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아니, 기본정신은 그거였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한번

더 깊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민현주 위원**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민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朱永順 委員** 일학습병행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등을 일부 개정해도 충분한데 별도의 입법으로 해당 제도만을 위한 법률안을 제정하는 것이 과잉입법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습근로자가 학생이면서 근로자라는 이중적 지위를 가짐으로 해서 법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개념 조항 등에 특별한 보호를 규정함으로써 해결이 가능하고, 일학습병행제도에 대해서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나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규정해도 충분하다고 보는데, 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나치게 법을 많이 정하는 건 옳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법을 해야 되겠다고 보는 이유는 일학습병행제가 우리 사회의, 능력 중심 사회의 가장 근간법이고, 따라서 그 예산에 관한 근거, 또 우리 학습근로자가 일을 하면서 배우는 부분이 있고 또 사업장 밖에서 순수하게 교육받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법률로 명확히 해 주어서 학습이기는 하지만 일을 하면서 배울 때는 분명하게 근로자 신분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그 과정을 거치고 나면 소위 과정형 자격을 주는 문제들이 있어서 이러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법으로 하는 게 옳다고 보고 있고, 이걸 하고 있는 해당 업계에서, 지금 중소기업에서 가장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중소기업 업계에서도 이것은 법으로 명확히 해 주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나치게 규제화되지 않도록 유의를 하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朱永順 委員** 이 법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중에 관련 부처로부터 의견을 받으셨을 텐데 그 중에서 산업부의 검토의견은 무엇이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것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요,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朱永順 委員** 산업부에서는 학습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와 학습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교육훈련과정 평가에 불합격한 경우에 학습근로자의 지위를 두고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등 법률 문제의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을 했고, 본 위원 역시 이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지금도 일학습병행제를 하기 전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수습기간을 많이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로기준법상? 그래서 수습근로자에서 수습이 끝나고 완벽한 근로계약을 맺는 과정에, 거기에 그간 판례로 많은 부분이 축적돼 있습니다. 통상의 근로자로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수습이 끝나고 난 뒤에는 자동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야지 거부할 수 없고, 그러나 수습과정에서 현저하게 업무능력이 떨어지거나 어떤 사유가 있으면 그 근로계약을 정식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는, 판례나 저희 해석으로 많은 부분이 정리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특별히 기업에 추가적인 부담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朱永順 委員** 그리고 제가 여러 차례에 걸쳐 얘기하고 있지만 일학습병행제의 시행에 대해 기업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훈련의 효과 등은 무시하고 정부 주도로 일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기업들의 부정적인 시선도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이러한 상태에서 이 제도가 정말 능력 중심 사회로 가기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국정과제라면 법보다 중요한 것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이고 그것을 위해서는 일학습병행제 역시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업과 마찬가지로 기업의 자발적이고 의욕적인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법안의 내용을 보면 기업의 참여를 유도할 요소보다는 각종 승인이나 사업주 준수사항 등 규제 위주의 내용들로 많이 채워져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제도 도입에 따른 시행착오를 줄이고 학습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규제도 필요하지만 꼭 필요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나누

어서 법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위원님 지적하신 바가 저희들이 일학습병행제를 운영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교육내용이 기업에서 필요한 내용으로 교육이 돼야 되고, 또 어떤 기업의 일학습병행제가 우리 사회에 필요한지 선정도 그 현장 수요에 의해서 선정이 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격까지 주어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과 어떤 정도의 수준으로 해야 된다는 거는 법령에 정하면서 어떤 기업으로 하게 할 것인가, 어떤 수요로 하게 할 것인가, 어떤 교육으로 할 것인가는 기업들이 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각 산업별로 모여서 산업별 협의체를 만들어서 자기 기업들이 소속된 산업별 협의체에 기업들이, 전문가들이 직접 모여서 교육훈련 내용, 그다음에 일학습병행제 기업 선정 이런 것들을 하도록 해서 실질적인 운영은 기업들이 해 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하면서 그 부분 더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朱永順 委員** 그러니까 기업들이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가급적이면 줄이고……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저희들은 기본절차만 정하고요.

○**朱永順 委員** 기업들이 편리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朱永順 委員** 마지막으로 본 제도의 시행에는 산업별 협의체를 비롯해 지역의 교육훈련기관, 산업별 단체 등의 역할이 대단히 큼니다. 그런데 기업에 대한 규제조항은 많이 있지만 오히려 그 역할이 큰, 예를 들어 산업별 협의체 등에 대해서는 통제방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산업별 협의체 역시 이해집단 중의 하나입니다. 이들에 대한 통제방안도 법안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일학습병행제를 포함해서 능력 중심 사회로 가는 데 있어서 수요에 해당되는 산업별 협의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산업별 협의체 구성에 관해서 기존에 있던 각 산업별 협의체와 협의를 해

나가고 있고요. 혹시 이 부분에 입법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더 고민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고 필요하면 또 입법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별 협의체와 지역별 인적자원협의회가 능력 중심 사회에 주된 역할을 하도록 해 가겠다는 게 정부의 기본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주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애 위원** 현안질의 한 두 개 정도 먼저 하고 법 관련한 것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내년 1월 1일자로 정년 60세 제도 시행이 되는데요. 노동자들은 기대가 큰데, 실제 기대보다는 우려가 더 많이 나오는 것이 지금 희망퇴직제도라고 하는 것 남발해서 실질적으로 강제퇴직을 많이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조금, 희망퇴직이라고 하는 건 정말 희망해서 퇴직해야 되는데 ‘당신은 희망퇴직 대상이다’ 이렇게 찍어서 내려오면 그건 희망퇴직은 아닌 것이지요. 그런 것들이 지금 횡행하고 있는데 전혀 감시감독, 관리감독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정년 60세 제도 시행 전에 노동자의 수를 줄이기 위한 전체적인 연령을 낮추기 위한 노력들에 대해서 대기업이 하고 있는 이런 노력—약용하는 노력이지요—에 대해서 노동부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난 2월 27일 날 이천의 주식회사 하이디스가 그간에 대만 이잉크의 기술 먹튀 논란이 계속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공장 폐쇄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향후 1000억 정도 흑자가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377명의 노동자 중에서 331명을 정리해고했거든요. 우리가 외국투자기업들을 국내에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고용창출을 유도하기 위해서 오히려 오라고 오라고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은 많이 합니다만 실제로는 와 가지고 기술만 빼 가지고 가고, 이렇게 정리해고하고 도망가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는데, 하이디스 정리해고 과정에 대해서는 노동부가 조금 더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제2의 쌍용차 같은 게 있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하이디스에 제재를 가할 수 있거나 하는 것을 다 찾아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부산에 있는 롤스로이스마린코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생산직 전원을 해고하고 똑같은 일을 하는 외주 협력업체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그냥 가서 일해라라고 하는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노동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위원님 말씀하신 3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애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주영순 위원님께서 이미 많이 지적을 해 주셔서…… 어차피 이것 법안을 논의하게 되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학습병행제를 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관련해서 지난 정부에서 했던 것 저는 노동부가 조금 먼저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열린 채용,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들 채용 이런 것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열린 채용 또는 고졸 채용을 해서 기업들이 정규편제에다가 집어넣지 아니하고 별도의 직제를 다시 만들어서 악용한 사례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았는데 이것에 대한,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안에서 승진이라든지 임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것들도 있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우선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것 문제가, 저희가 가장 우려되는 게 이거지요. 일학습근로자라고 해서 일정기간 노동 그다음에 또 비정규직 노동자 2년까지, 이런 식이 되면 고용과 관련해서 실제로는 생각보다 더 많은 유연성을 기업에다 주는 방식으로 되거든요. 제3의 편제를 통해 악용하는 그런 방식에 더불어서, 고용기간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비정규직의 사용제한기간 더불어서 학습기간까지 포함되는 방식으로 해서 악용할 가능성은 너무나 크다, 지금 이것에 대해 막을 수 있는 대안 같은 것은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위원님이 지금 일학습병행제 학습기간이 끝난 후의 신분과 관련된 지적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처음 시범사업을 했을 때도 그렇고 그렇게 악용되지는 않으리라고 보고 있고요. 이유는 선발할 때 기업들이 고등학교 나오고 또 전문대 나오고 한 친구들을 자기 기업에서 장기간 근무를 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교육도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작년에 우리가 시범사업을 했을 경우에 이게 끝나고 성과가, 그냥 들어오는 것보다 성과가 훨

씬 높다고 대부분 하고 있기 때문에…… 일학습이 끝났다고 그래서 내보내면 기업에서도 굉장히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일학습 기간 동안에 기업도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야 되고 일정기간 시간을 빼서 교육을 별도로 해야 되거든요, 시스템을 다 구축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염려는 그렇게 크지는 않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처음에 지적하신 과거에는 열린 채용을 해서 고졸 채용을 하다가 왜 현 정부 들어서는 그 부분이 좀 약하나 그런 의미로 아마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한정애 위원**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열린 채용 했던 것, 고졸 채용 했던 것 기업들이 과연 해당 직제를, 어떤 방식으로 편제를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다, 실제 저희가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 별도의 직제로 가지고 있고 정규직 편제로 두지 아니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승진이라든지 임금에서 별도의 대상으로 관리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부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특별하게 노동수요와 관련된 것을 창출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를 만드는데 그것이 사실은 제대로 관리감독이 안 돼서 또 다른 편제를 만들어내는 방식, 자꾸 노동의 불안정성을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확대시키는 방식으로 나가는 것에 대한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형태라고 봅니다.

하나는 정말 직무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단일호봉제가 가져오는 폐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무에 맞게끔 별도의 임금체계를 갖는 것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문제는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과거의 열린 채용하고…… 지금 박근혜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학습병행제는 그 부분을 보완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린 채용에 있어서는 고졸을 채용하면 그걸로 종료되고 그 직무에 맞게끔 임금을 주는 형태였다면 일학습병행제는 그것을 보완해서 일단 고졸이나 전문대 나온 청년들을 채용해서 지속적으로 학습을 통해서 소위 대졸이라는 그 직급체계에, 언제든지 그 체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사다리를 만들어 주는 게 일학습병행제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보완된 게 일학습병행제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한정애 위원** 아니, 좋은 쪽으로…… 물론 제도라는 것이 부작용 같은 것이 없고 잘 운영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항상 그렇게 장밋빛으로 끝이 나지 않는 굉장히 많은 제도나 또는 정책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가면서 해야 되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 부분도 염두에 두고 하겠습니다.

○**한정애 위원** 어쨌든 법안을 논의할 때 그런 것들에 대한 답변이 제대로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한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 위원** 오늘 상정된 의안은 아닌데 원래 상정되려다가 처리를 못 하게 돼서, 그래도 고용노동부장관님한테 한번 의견을 다시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요.

소위에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과 관련해서 합의 처리하려다가 정지된 거는 보고받으셨을 거고요. 최저임금이 있고 또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임금을 받도록 노력하는 이런 조항을 개정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 가지 다양한 임금 형태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생활임금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기본임금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생산성과 연계된 임금이라는 개념도 있을 수 있고 고임금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개념이 있을 수 있는데, 그중의 하나로서 생활임금과 관련한 몇 가지 지자체들의 시도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다른 지자체는 생활임금이라는 표현으로 안 하고 다른 표현으로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적정임금이라는 개념에 포함되는 범주인지 아닌지 이것을 굉장히 소프트하게 논란을 벌이다가 경직되면서 이게 막혀 버린 거거든요. 그에 대해서 장관님은 어떤 입장이신지 좀 확인을 하고 싶은데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대안으로, 말 그대로 '최저임금을 이유로 낮추지 아니한다'까지가 기존의 규정이었고, 여기에다가 국가와 자치단체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한 임금, 이거는 헌법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법률용어입니다.

○**이인영 위원** 그건 당연하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적정임금은 법률용어

라서 자치단체별로 쓰는 용어를 법으로 그냥 받는 것은 적절치 않아서 법률용어로 적정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조항을 두자고 했어요. 따라서 각 자치단체가 '적정한 임금'으로 표현돼 있는 법률용어를 어떻게 행정용어로 쓰는가는 법으로 규제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느 자치단체는 생활임금이라고 쓸 수도 있고 어느 자치단체는 적정한 임금이라고 쓸 수도 있고 또 어느 자치단체는 기본임금이라고 쓸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다만 이거는 분명히 노력조항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노력조항. 왜냐하면 이 조항이 노력조항을 넘어서서 제한하는 규정으로 가게 되면 대한민국 사회는 중앙정부의 최저임금과 자치단체의 최저임금이 이분화되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순수하게 노력조항으로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인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적정임금의 범주에서 생활임금이든 기본임금이든 이런 조항들이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적용되면 되는 거다 이런 말씀 아니세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러니까 지방정부나 자치단체가 말 그대로 국가가 정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인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조항에 해당되는 영역 아니겠어요? 생활임금이라든가 기본임금이라든가 생산성 연계 임금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자치단체별로 자기 조례에 따라서…… 다만 분명한 것은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임금을 주는 노력의 문제일 테니까 그 영역에 해당하는 문제이고, 따라서 거기에서 생활임금이든 기본임금이든 이런 것들이 배제된 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그 조항에 포함될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러니까 무슨 용어를 쓰는가는 문제가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걸 노력하는 경우하고 제한하는 경우하고는 명백히 다르다는 거지요.

○**이인영 위원** 그렇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제한을 하게 되면 이 건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법과 자치단체가 다른 명목으로 하는 최저수준이 돼 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엄청나게 법에 혼란을 가져오기 때문에 제한하는 정도, 입찰을 제한한다 할지 일정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의무화해 가지고 그 이하는 못하게 한다는 거는 이 취지하고는 안 맞다 저희들

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인영 위원 예, 그것은 저도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 고용노동부의 그런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게 생활임금 영역이, 생활임금이라는 어떤 영역이 거기에 포함되느냐 아니냐 이것만 분명해지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저도 아까 잠깐 실무자로부터 보고를 받았습시다마는, 결국은 생활임금이란 그 용어를 서로 사용하는 분들 간에……

○이인영 위원 차이가 있겠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개념에 차이가 있어서 빗어지는 혼돈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임금이란 부분은 임금의 개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통성을 가지고 쓰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까에 대해서는 굉장히 쓰는 분마다 다르게 보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적정임금’이라고 표현한 이 법안 내에는 생활임금이라고 자치단체에서 쓸 수 있고 또 적정임금이라고 그대로 쓸 수도 있고 기본임금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에 담겨진 그대로 이것은 노력조항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다른 규제의 요인으로 하는 것은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최저임금이 정해져 있는데 규제로 하게 되면 거기에 다른 최저임금, 더 높은 최저임금이 있게 되면 시장에 굉장히 큰 혼란을 줄 수 있다……

○이인영 위원 물론이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래서 그런 의미의, 입찰을 하는데 이것으로 딱 제한한달지 이런 의미의 생활임금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규제의 정도를 가지고 조금 혼돈이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이인영 위원 그 점을 그러면 다시 확인해 주시고 이 법의 심사 과정에서 좀 논란을 정리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협조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영 위원 그리고 저도 지금 아직 생활임금이라는 개념이 사회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법적으로 단일하게 정리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못 된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

것도 이미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런 이유 때문에 ‘생활임금’이라는 법적 용어까지 우리가 규정하지 않고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임금’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런 정신, 취지 이런 것들을 해소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이런 과정들이 지금 시점에서는 타협점이고 절충점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얘기를 했던 건데 그게 약간 배제된다 이런 느낌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아까 해석을 하시는 것 같고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 것 같아서……

어쨌든 포함되어 있는 영역인 것은 틀림없는 거지요, 그러면?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다양한 것들이 적정임금이란 개념 안에 포함은 된다, 다만 이것은 순수한 노력조항이다 이런 의미가……

○이인영 위원 그러니까 노력조항이라는 것은 알겠고, 포함되어 있는 것은 맞는 거고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이인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이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예, 권성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동 위원 장관님, 조금 전에 이인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과 같이 묻는데 헌법상 ‘적정임금’의 개념이 뭐예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러니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줄 수 있다는 개념, 생활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의미의……

○권성동 위원 이것은 굉장히 애매모호한 불명확한 개념 아니에요,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렇습니다.

○권성동 위원 그런데 적정임금에 생활임금이 포함된다라고 했을 경우에 앞으로 자치단체가…… 정규직 공무원이야 임금이 딱 결정되어 있지만, 그렇잖아요?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해서 딱 정해 있지만 무슨 용역근로자나 이런 경우에 임금교섭을 하는데 ‘생활임금이 포함된다’ 그러면 생활임금을 주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했는데 왜 생활임금을 안 주느냐, 지금 노력 안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게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나치게 확대 해석되거나 그렇게 되면 다툼의 소지는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권성동 위원** 그러니까 장관님, 이게 중요한 게 뭐냐, 지금 장관님은 생활임금이란 용어를 써도 좋고 기본임금 용어를 써도 좋고 다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금 생활임금에 대해서 소위 시민단체에서는 어느 정도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러니까 간사님 말씀하신 대로 각자 생활임금이란 용어를 쓰는 부분이 개념하고 활용까지를 포함했을 때는 쓰는 부분별로 전부 달리 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쓰는 것을 그 생활임금 이하에 용역을 줄 수 없게 하거나 이렇게 확대 해석하고 규제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희 법에는.

그러니까 개념은 자치단체가 뭐로 쓰는 것인가는, 적정임금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가는 행정용어이고 임의적 용어이기 때문에, 법률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자치단체에서 어떤 용어를 쓰도록 하는 그럴 영역은 아닌데……

**○권성동 위원** 그러니까 그게 법률용어가 아니고 생활용어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그것은 중의적인 뜻이고 기준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생활임금이란 용어 자체가 어느 정도 지금……

뭐가 생활임금이예요? 최저임금과 달리 생활임금이 뭐냐, 생활임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약도 지금 많이 제시가 되어 있는 형편이고, 그러면 공약 제시하면서 생활임금이 뭐냐 그러면 전체근로자 평균 임금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렇게 지금 다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식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포함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결국은 법률용어도 아닌 것이 해석상, 노동부장관이 생활임금도 포함된다 그러는데 왜 생활임금 안 주느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이 장관이 그렇게 해석함으로 인해서, 물론 장관의 해석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게 나는 나중에…… 지방자치단체 지금 다 재정이 어렵고 다 빚내서 생활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굉장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냥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한 임금을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 적정한 임금이 뭐냐에 대해서는 그냥 당사자들끼리 알아서 교섭하게끔 놔두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서 나는 여

기에서 여기까지가 적정하다, 그건 자기들이 해석하게 놔두면 되는 것이지 굳이 여기에 생활임금도 포함된다, 뭐 포함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러니까 위원님, 생활임금을 쓰는 용어의 차이라고 저는 보는데, 용어를 자치단체에서 최저임금보다 1% 더 줄 수도 있고 5% 더 줄 수도 있고 자치단체별로 자기들이 정한 내용을 어떤 용어로 쓰는 것인가는 우리가 관여할 영역은 아니다, 그 쓰는 것들이 다 우리가 표현한 법률용어 ‘적정임금’이란 표현에 녹아들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그것을 생활임금이라고 쓰는 분들 중에 그러면 지금 실태적으로, 현실적으로 그것을 이유로 조례로 입찰을 이 이하는 못 하게 한달지 이런 규제적 요소로 이 부분을 써서는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말 그대로 표현은 적정임금으로 되어 있고 이 부분은 노력조항이다, 따라서 이게 규제적 요인으로 하게 되면 대한민국 사회에 국가가 운용하는 최저임금과 자치단체가 운용하는 다른 기준의 임금이, 2개의 최저임금이 존재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정임금이라고 쓰여 있는 것을 자치단체별로……

**○권성동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취지인지 알려주세요. 무슨 취지인지는 알겠는데……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좋은데 그것을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규제적 요소로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해서 저희들이 노력조항으로 해 놓은 겁니다.

**○권성동 위원** 하여튼 또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권성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봉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홍 위원** 장관님, ‘생활임금’이란 말이 처음 나온 단어는 아닙니다. 그러나 노동부로서 생활임금이 적정임금 속에 포함되어 있다, 그것이 나중에 일파만파로……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아닙니다. 제가 의미하는 생활임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용어는 통상 일부의 자치단체에서 쓰는 그 생활임금을 포함하고 있다는 취지가 아니고 누구든지 이 적정임금을 자치단체가 달리 표현할 수 있다 그 얘기를 얘기한 겁니다.



○**최봉홍 위원** 듣는 사람들이나 노동자들은 그것을 오해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주관을 가지시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최봉홍 위원** 그다음에 현안 문제 몇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노동신문에 통상임금 문제,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임금피크제 공익위원안이 안 맞다고 양대 노총에서 다 반대한다고 하고 나왔습니다. 민주노총은 4월 총파업을 생각하고 있고 한국노총은 음성적으로 5월 총파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3월까지 노사정 합의를 이루어 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리가 오늘 제가 신문을 분석해 봤더니 너무 먼 것 같은데, 정부 측에서 해당 감독관님이나 이런 분들을 각 산별하고 그런 데 좀 파견하셔서 가지고 정책 당국자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 거리를 좁힐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신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다양하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봉홍 위원** 나는 그 내용 봤을 때, 제가 언론에 나온 그런 내용으로 봐 가지고는 조직에 따라 가지고 수긍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에는 조직 간에 그냥 모아 가지고 상무위원회에서 결정지를 사항이 아니고 현지 감독관님들 통해 가지고 지역에 있는 단위조직하고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그래서 밑에서부터 손발을 맞춰 나가야 후유증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4월, 5월 노동현장이 시끄럽지 않도록……

그런데 그 사람들 얘기는 그렇습니다. ‘뭔가 한 개라도 주고 우리가 9개를 받아야 되는데 한 개도 줄 것이 없다’ 이게 노동현장의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10개 다 찾아야 되겠다 하고 마지노선을 치고 있는 건데 흥정에서 그런 것은 있을 수 없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문제를 기술적으로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위원님 먼저 지적해 주신 생활임금 관련해서 정확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일부 자치단체에서 개념화하고 있는 그 생활임금이 우리 적정임금에 자동적으로 포함된다

는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에는 ‘적정임금’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 적정임금을 각 자치단체가 어떤 용어로, 자치단체 용어로 쓰는 것은 우리가 법으로 강제할 일은 아니라는 의미이고요.

다만 여기는 노력조항이기 때문에 지금 일부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다른 것을 제한을 하고 또 입찰 참가를 제한하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사회의 최저임금에 또 다른 최저임금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하다, 이 법의 개념은 거기까지는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해 드린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여러 가지 노동시장 구조개선과 관련한 산별연맹 또 각 노동조합별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도 다양하게 저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궁극의 목적이 말 그대로, 오늘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정년 60세를 법으로 보장했는데 많은 근로자들이 정년 되기 전에 퇴직하는 그런 우려들을 좀 해소하고 가급적이면 하도급화 가는 이 현상, 고용이 안 좋은 쪽으로 가는 현상을 기업들이 직접고용 하고 그 직접고용도 무기계약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흐름을 반전시키는 취지를 잘 설명해서 가급적이면 3월 안에 핵심에 대해서는 합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봉홍 위원** 협상 분위기를 만드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최봉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체토론을 마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81항까지 79건의 법률안은 각각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들 모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심의한 법률안 중 의사일정 제5항 국립공원공단법안과 의사일정 제31항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안, 의사일정 제70항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의사일정 제71항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

에 대한 공청회 개최 여부는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취지에 맞도록 답변서…… 오늘 서면질의는 없었는데…… 있으세요? 이인영 위원 서면질의 있습니다.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한정에 위원도 서면질의 있었습니다.

환경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5분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5분 후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82.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

○위원장 김영주 의사일정 제82항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먼저 공청회가 예정된 시간보다 2시간 이상이나 늦어져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공청회 대상의 법률안은 최봉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안, 전병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원순환사회 촉진기본법안, 이윤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원순환촉진기본법안, 이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원순환사회형성 기본법안 그리고 정부가 제출한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안 이상 5건의 제정법률안입니다.

공청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원빈국인 우리나라는 천연자원과 에너지원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또한 발생한 폐기물도 최대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매년 매립·소각되고

있는 6만여 톤의 폐기물 중 56%가 재활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매립되고 있으며, 넘비현상으로 인하여 매립장 신설도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반면 영국, 스위스 등 EU국가는 안정적으로 자원을 확보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하며 매립률 제로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1990년대부터 매립·소각부담금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청회 대상인 5개의 법률안도 이러한 인식하에서 폐기물을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들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취지의 법률안들이 산업계나 경제단체 등에서는 새로운 환경규제나 기업부담으로 인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공청회를 통하여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고 사회구조가 자원을 소비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순환시킬 수 있는 모습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참고로 오늘 이 자리에는 환경단체 및 산업계 및 경제단체에서 많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방청을 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공청회에 참석하신 진술인과 참고인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여 주신 진술인과 참고인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개를 받으시면 잠시 일어서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술인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위원장석에서 바라보아 왼쪽부터 박준우 상명대학교 명예교수입니다.

전재경 사회자본연구원 원장입니다.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사무총장입니다.

현준 중소기업중앙회 창조경제부장입니다.

신충식 한국산업폐자원공체조합 부이사장입니다.

(진술인 인사)

다음은 참고인입니다.

홍정기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입니다.

강성천 산업통상부 산업정책관이 참석 예정이었습니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신동학 기후변화산업환경과장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참고인 인사)

다음은 공청회의 진행 순서와 방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개해 드린 순서대로 다섯 분의 진술을

모두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알려 드린 바와 같이 10분 이내로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5분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진술인과 참고인 상호 간에는 질문과 토론이 허락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진술인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명대학교 박준우 교수님!

발표는 10분입니다.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박준우 상명대학교 박준우입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순환경제 혹은 자원순환사회로 전환하는 것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적으로 피할 수 없는 소명인 것 같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 안 드려도 굉장히 시급한 것인데, 사실 수년 전부터 이 법안을 제정하기 위해서 정부와 각계각층이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늦어졌지만 이번 계기에 꼭 통과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면 5개의 법안이 올라와 있는데 각 법안에서 공통적으로 다 같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칭이 기본법이든 아니든 명칭과는 상관이 없이 필요한 원칙, 각계각층의 역할분담 이런 것들을 제대로 담고 있어서 어느 법안이든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런 법안이 만들어지는 데 그 많은 시간을 허비한 것을 생각하면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또 강제적인 조항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어떤 법안은 부족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에 특히 주요한 것은 소각·매립처분부담금인데 이것은 소각이나 매립으로 가는 폐기물을 어떻게 하면 순환방향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그런 경제적인 유인책으로 직접적으로 관련 사업자를 유인하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현실에서 시급히 시행되어야 할 정책으로 모든 제출된 법안이 공통으로 담고 있기 때문에 다행입니다마는 이 실행성을 담보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꼭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폐기물과 순환자원의 용어 정의와 관련

해서 의견들이 많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원순환을 촉진함에 있어서 관련 산업의 순조로운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폐기물 관련 규제 완화 또는 합리화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자원순환사회에서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환경을 보전하는 데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되며, 자원순환과정에서도 다른 경제 활동과 마찬가지로 환경보전의 기본원칙이 지켜지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원의 순환을 포함한 모든 경제활동은 환경성 기준을 우선적으로 충족하여야 하고 또 폐기물관리법은 이러한 버려지는 모든 물건으로 인한 사람과 환경에 대한 위해성을 방지하기 위한 기초적인 제도입니다.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에 대한 정의는 폐기물 관리의 방향을 규정짓는 폐기물관리법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 개념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 우리 사회에 정착된 것으로 관련 모든 법과 제도에 공통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는바 폐기물 용어에 대한 정의를 변경하는 것은 보다 보수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용자의 관리에서 버려지는 시점을 판단기준으로 하는 우리의 용어 정의 방식은 세계적인 기준을 따르고 있으며 순환자원의 용어 정의도 폐기물 개념의 기본을 지키는 방향으로 정의되어야 자원순환 촉진과 환경보전이 양립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재활용 가능한 혹은 유용한 모든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분류해서 원천적으로 폐기물에서 제외하는 것은 자원순환보다 더 큰 범위의 환경보전에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유용성이 있는 모든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하여 폐기물 관리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물건 자체의 가치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이나 물건의 유용성이라는 것은 사람의 활동과 관련해서 평가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용자가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유용성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같은 물건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버려지는 경우 아무리 그 내재한 가치가 높은 물건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회수되어 다시 사용되기 전까지는 그 물건들은 유용성이 없는 것이며 다른 사람에 의하여 재이용될

때 비로소 유용성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원순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은 자신의 물건 이용과정에서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물건이 특정한 개인의 소유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물건으로 인한 사람과 환경에 대한 피해방지의 책임은 그 소유자에게 있는 것이지만 그 물건이 더 이상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여 버려지는 경우에는—적법하게 버려지는 경우—그 물건으로 인한 타인이나 환경에 대한 피해방지 책임은 개인에서 공공영역으로 넘어가는 것이며 공공부문은 이런 버려진 물건을 폐기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법제상 특정 개인의 소유에서 벗어나 공공영역에 버려진 물건의 위해성을 관리하는 길은 폐기물관리법을 통한 관리밖에 없으며 더 이상 관리가 필요하지 않게 되기 전까지는 환경에 위해를 가하는 폐기물로 분류되어서 관리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모든 국가에서 특정의 폐기물을 원천적으로 폐기물에서 제외하지 않고 어느 시점에서 폐기물이 더 이상 폐기물로서의 관리를 받지 않도록 하는 폐기물 종료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폐기물이 공공영역에 버려지지 않고 바로 재활용 과정에 투입되는 경우 폐기물에서 제외하여도 실질적인 관리상의 문제는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폐기물 종료시점에 대한 판단은 경제성이 아닌 환경성 기준을 근거로 이루어져야 하며 관리의 필요성 여부가 사업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하여 이루어질 경우 환경성이나 공공성 기준이 아닌 경제적인 이유로 폐기물 종료가 나타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 재활용을 통한 경제적 이득을 초과하는 환경피해가 나타날 수도 있고, 재활용의 미명하에 환경상 위해한 물질의 투기·방치가 만연하고, 또 수입폐기물 범람으로 폐기물관리체계의 붕괴를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폐지, ‘순환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이것은 저도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녹색제품은 순환제품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녹색제품에 순환제품이 포함되도록 자원순환법과 별도의 입법이 필요한 사항으로 생각이 됩

니다.

그리고 폐기물관리법의 축소 개편이라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자원순환법과의 조화를 위해서 개선하고 보완의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자본연구원 전재경 원장님 진술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전재경 제가 드릴 말씀은 정부 모형 그리고 시장 모형과 같은 모형 이론의 기초를 두고 법안들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 그리고 법학의 관점에서 5개의 법안이 어떤 것이 입법기술적으로 우수하다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5개나 되는 법안이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법안들의 특징을 정부 모형이다 혹은 시장 모형이다 이렇게 분류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폐기물관리법 그리고 재활용법을 포함한 현재 자원 관련된 법률들을 본다면 자원재활용법이 폐기물관리법에 종속되어 있는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건은 자원순환촉진법이라고든가 혹은 위원님들이 상정하신 이 기본 법안들이 과연 폐기물관리법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순환사회의 형성을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폐기물관리법의 트랙에서 그냥 자원순환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아갈지 여기에 대해서 정책적인 판단을 내리시는 데 도움이 되도록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법안에 대해서 좀 살펴본다면 제일 먼저 제출하신 최봉홍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안은 ‘순환자원’이라는 개념과 ‘폐기물’이라는 개념을 분리해서 병행시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폐기물을 던지 않고서도 순환자원을 인정할 수 있도록 진일보된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봉홍 의원님 안은 정부로 하여금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5개의 법안이 정부중심 모형이냐 아니면 시장의 자율과 재량을 존중하는 모형이냐 두 가지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최 의원님께서 법안 제21조에서 정부로 하여금 관리대상자에 대해서 목표관리제를 실시하게 하는 한편 또 순환이용지정사업자에게 순환자원 등의 사용촉진을

요구함으로써 상당한 행정비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에게 책임을 지우는 그런 정부 모형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병헌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기본법안 역시 순환자원과 폐기물 개념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병헌 의원님 안에서는 ‘재제조’라는 개념을 순환자원과 관련지어서 부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병헌 의원님 안은 최봉홍 의원님 안과 달리 정부 개입을 최소화시키려는 입법 의지가 엿보입니다.

세 번째로 이윤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기본법안은 전병헌 의원님 안처럼 시장과 공동체에 대한 정부 개입이 최소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정부중심 모형을 탈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윤석 의원님 안에서는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그 규격과 품질기준을 정하고 품질인증까지 실시하도록 수권함으로써 감시자의 영역에 머물러야 할 환경부장관의 역할을 사업자 쪽으로 다가가게 만들고 있어서 법리상 신분의 혼동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이완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기본법안 역시 폐자원을 기초로 순환자원과 폐기물을 정의합니다.

앞서 세 분의 의원님께서 폐자원이라는 개념을 쓰지 않고 폐기물과 순환자원의 개념을 각각 분리해서 설명하고 계시는데, 이완영 의원님 안은 폐자원을 기초로 해서 폐자원에서 순환자원을 구분하고 이 순환자원을 제외한 폐자원을 폐기물이라고 함으로써 중간 단계를 하나 설정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완영 의원님 안은 전병헌 의원님 안이나 이윤석 의원님 안과 마찬가지로 정부 개입을 최소화시키면서 자원순환을 촉진시키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완영 의원님 안은 전 의원님 안과 같이 국가 목표와 행정 목표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후변화를 둘러싸고 각국 정부가 취하는 태도를 보면 국가 목표와 행정 목표를 구분하는데, 지금 이완영 의원님 안에서는 행정 목표를 국가 목표와 동일시해서 쓰시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섯 번째로 정부가 제출한 자원순환사회전환 촉진법안을 보면 앞서 제출하신 의원님들의 입법안들보다 뒤늦게 제출되었지만 법의 진화라는 관점에서, 행정청의 명령과 통제를 강조하는 정부중심 모형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의원님의 기본법안들은 시장과 공동체를 좀 부각시키면서 정부에게 다시 수권하는 그런 구조를 보이고 있는데 환경부가 대표하는, 장관이 대표하는 정부제출안은 시장과 공동체의 기능을 다소 후퇴시키고 정부의 책임을 강화시키는 그런 법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법안에서 가장 특징적인 모습은 폐기물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순환자원을 설명할 수 없는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순환사회 형성에 다소 한 단계 더 디디고 나아가는, 즉 일단 불용물로서 배출되는 물질들을 폐기물 트랙에다 집어넣어서 심사를 하고 그것을 다시 유효하나 경제성이 있나 그다음에 무해하나 이런 환경성을 따져서 줄업을 시키는 그런 태도를 취하기 때문에 현재 폐기물관리법의 규정과 별도로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부법안이 왜 이렇게 행정청 중심의 명령과 통제 중심의 정부 모형으로 나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시장이라든가 공동체가 신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정부 모형에, 정부법안에서는 방치 폐기물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될 것을 경계하는 태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즉 법리적 차원에서 정부 모형이 잘못됐다고 말할 하기 어려운 까닭은 사회 경제적인 기반이 시장의 자율과 공동체의 재량에 맡길 만한 수준이 되지 못했다고 정부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과 공동체가 그렇지 않다라는 반증을 제출해서 자율형으로 나아가더라도 가능하다는 그런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아마 정책적인 판단에서 의원님들이 제출하신 기본법안의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정부 모형이라 할지라도 시장과 공동체에 경로를 열어 주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일단 폐기물에 집어넣지 않고, 폐기물 개념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도 순환자원이 성립될 수 있는 경로, 즉 폐기물 개념과 순환자원 개념을 독립 병행시키고 그다음에 폐기물이 아닌 처음부터 순환자원이 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해 주는 그런 노력이 부가된다면 명령통제형이라 할지라도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행 법률들에는 그러한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순환사회 형성을 위해서는 시장과 공동체 그리고 정부가 거버넌스를 이뤄야 되기 때문에 이 거버넌스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명령·통제하거나 무조건 재량을 달라거나 이렇게 하기 보다는 사회협약 내지 또 자발적인 협약을 통해서 정부와 공동체·시장이 서로 거버넌스를 하는 그런 협치 구조를 추구하는 것들이 이런 법안에 마련되면 좋겠다, 5개의 법안이 통합될 때 그런 거버넌스 체계가 염두에 들어진다면 아마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사회연대 김미화 사무총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김미화 안녕하세요? 김미화입니다.

자원순환 촉진 관련해서 법안이 2001년도에 국회에 계류를 했다가 사실은 통과하지 못하고 15년이 되었는데, 지금도 아직 5개 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빨리 통과했으면 좋겠다라고 의원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분의 다섯 가지의 법안 사례를 살펴보면 몇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용어의 문제입니다.

폐기물과 자원순환 이 용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가 쟁점인 것 같습니다.

먼저 최봉홍 의원님의 이야기를 보면 순환자원은 폐기물의 하위 범주이고 제대로 자원순환이 됐을 때, 제품으로 나왔을 때는 인정해 주는 그리고 완전히 제품이 되면 폐기물종료인정제도를 도입하겠다 이러한 걸로 갖고 있습니다. 이 안은 환경부 안도 비슷한 안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병헌 의원님 안은 일단은 모든 제품 등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순환자원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고, 순환자원 하다가 안 되면 폐기물로 분류할 수 있다고 처음부터 다르게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환자원과 폐기물의 상호 전환, 이럴 때는 폐기물일 수도 있고 이럴 때는 재활용일 수도 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윤석 의원님은 부산물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상위 개념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부산물도 순환자원이 됐을 때는 자원, 순환자원이 안 됐을 때는 폐기물로 분류를 한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완영 의원님은 새롭게 ‘폐자원’이라는 이름으로 도입을 했고요. 폐자원을 상위 개념으로서 분류를 하고, 다른 여타 의원님들과 마찬가지로 보면 자원이 되고 난 다음에 안 됐을 때는 이걸 폐기물로 분류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병헌·이윤석·이완영 의원님의 안을 보면 순환자원으로 분류됐을 때 범주가 폐기물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우려되는 부분도……

우리가 요즘 안전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 갖고는 이거는 시장에 맡겨지기 때문에 시장에서 하시던 분들이 이거는 재활용을 잘하니까 재활용률이 높으니까 재활용, 이걸 안 되니까 폐기물로 이렇게 분류하는 이 부분들에 있어 갖고 시장에 맡겨두는 부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그러니까 누가 그러면 시장에서 과연 잘 정리를 해 줄 수 있을까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 갖고는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라는 부분들에서 특별하게 적용받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약간 우려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순환사회연대는 이러한 첫 번째 안을 가지고 검토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순환 이용에 있어 갖고는 당연히 시민단체가 확대를 해야 되고 당연히 모든 것은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환 이용에 있어 갖고는 전제 조건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국도 마찬가지로인데 첫 번째 전제 조건이 안전입니다. 이게 정말 유해한가 유해하지 않은가 그걸 가지고 자원이라는 부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원을 사용할 때는 그러면 어떤 조건에서 배출되느냐, 어떤 식으로 잘 관리되었느냐 이러한 것들을 먼저 평가하면서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원의 부분들은 항상 환경적인 안전, 자원에서의 유용성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바라보겠습니다.

예를 든다 그러면 원목 공정에서 폐목재가 부산물로 나왔을 때는 충분히 재활용자원이기 때문에 졸업인정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 현장에서 각각에 사용되었던 이런 폐목재가 과연 자원순환으로 충분히 사용 가능한가, 이런 것을 시장에 맡겨놨을 때 안전한가 이러한 부분들은

좀 더 심사숙고하여 논의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기타 등등 폐산, 폐알칼리 이런 문제…… 이런 것들 담아왔던 유기용제 통들 이러한 것들도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좋은 자원이다라고 물론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었느냐 여기에 따라 갖고 관리의 부분들은 달라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가 가치가 높은 것 그런 것들은 다 재활용인정제도를 통해서 줄업을 해 주는 겁니다. 이걸 재활용을 할 수 있다 이러는 거고. 그다음 유해성이 있을 때는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폐기물로 분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사업자의 자원순환 목표 관리입니다.

최봉홍 의원님은 자원순환 목표 관리 미달성시에 자원순환부과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안에서 보면 자원순환 목표 관리를 하되 우수 사업장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미이행 사업장에는 여러 가지 개선명령 이런 것들을 유도하고, 안 됐을 때는 명단 공개 등등의 어떤 페널티를 내린다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굉장히 우수한 것 같고요. 다른 전병헌 의원님이나 이윤석 의원님은 개별 사업자에게 자원순환 목표를 부여하고 관리하는 안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최봉홍 의원님이나 환경부의 안이 비슷하고, 이러한 것들은 대체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찬성을 하고.

또 보면 현재 이중적인 잣대, 이중적인 부과 아니냐라고 많이 우려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폐기물관리법에서는 다량배출사업자 대상으로 감량의무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 연결된다 그러면 이중 부담, 업무 부담의 증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최봉홍 의원님의 안들을 보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부과금을 부과할 경우에는 자원순환지표인 최종처분율에 있어 갖고는 이중 규제의 우려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산업계와 기타 시장과 같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갖고 하위법령을 만드는 것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소각·매립 부담금은 모든 의원들이 갖고 있는

의견이기 때문에 저희는 대체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찬성을 하는데, 지나치게 소각·매립 부담금이 높아지면서 다른 시장의 어떤, 인위적으로 낮추면서 재활용해야 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재활용이 안 되고 그냥 소각으로 가면서 인정해 주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 갖고는 우려를 금하고, 좀 더 세부적인 논의와 철저한 논의를 통해서 제도가 만들어지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에너지 회수 관련해 갖고도 감면 조치 뭐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도 단순히 에너지 회수를 했다 그래 갖고 감면 조치해주는 이런 부분들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된다, 어느만큼 했는가 이 목표 달성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한 세 가지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이 5개의 법안이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만 서로가 필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만든다고 그러면 충분히 좋은 법안들이 만들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그러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국도 마찬가지인데 모든 제품은 다 자원입니다. 자원인데 다 그러면 자원으로 가능한가라고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우리가 우려스럽다……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폐형광등의 유리를, 우리는 지금 폐형광등 부수고 난 그 유리를 재활용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재활용이라고 그러니까 재활용 사업자가 그걸 가지고 주택가에 거기다 방치를 해 뒀습니다. 몇 개월 동안 방치를 해 뒀는데 그러는 동안 시민들은 모르고 계속 수은의 이걸 이렇게 흡입을 하게 되는 거지요.

이러한 것들을 과연 시장에 그냥 이렇게, 모든 것들이 자원순환 될 것이라면서 시장에 맡겨두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그건 저는 아니라고 보고 적절한 규제와 적절한 통제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좋은 것들은 시장에 더 확대를 시키고 그 외에 아닌 것들은 규제를 해야 된다, 이것만이 정부가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래야만이 질 좋은 재활용품을 우리가 생산할 수 있다, 항상 재활용품을 싸구려가 아닌 질 좋은 재활용품들로 만들려면 품질부터 저는 규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원순환법 제정에 관련해서 한마디 더 말씀드린다면 벌써 거의 15년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시장에서도 원하고 그다음 시민단체도 원하고 정부

도 원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는데 약간의 이해관계가 갈려 있는 이런 것 때문에 15년이 지났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제는 더 미룰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나라는 자원도 부족하고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랬을 때 정말 이렇게 순환자원을 잘 활용해 갖고 자원의 가치로서의 어떤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 그리고 또 그걸로써 기술 향상을 통해서 우리가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것 이러한 부분에 있어 갖고는 시급성을 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중앙회 현준 창조경제부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현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술환경 업무를 맡고 있는 현준입니다.

먼저 중소기업계는 순환자원의 범위를 확대하고 자원의 활용도를 높여 자원순환 사회로 전환하고자 하는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 취지에는 적극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자 합니다.

먼저 비용 측면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중소기업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서, 최근에 신규 환경 6법이 만들어짐에 따라서 중소기업의 각종 부담금, 제반 비용이 이제 증가되는 상황에서 추가로 자순법이 시행될 경우에는 순환자원 인정이라든지 품질표지인증, 부담금 등 제도 이행에 각종 비용이 발생합니다.

참고로 아시겠지만 부담금이라는 게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작년 말까지 99개인데 이번에 폐기물처분부담금이 만약에 시행이 되면 100번째 부담금이 됩니다. 특히 환경부에서 소관하고 있는 부담금이 스물세 가지로 가장 많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안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조항이 있습니다.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순환자원 인정이라든지 품질표지인증 이런 행정비용 같은 게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작은 소기업들이나 영세한 소기업들은 지금도 가뜰이나 경영 여건이 어려운데 과연 제도 이행능력이, 아까 말씀드린 신규 환경 6법을 제대로 좀 시행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이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수수료 등 제반 비용에 대한 중소기업 감면·면제가 더욱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재정 지원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 목표가 설정될 경우에는 기업들은 목표를 달성하고 최대한 자원을 활용하려면 새로운 에너지 회수율이나 이런 걸 높이기 위해서 설비 개선이 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영세한 소기업들은 자금 조달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도 이행능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융자 도입이 더욱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주에 한 번 경기도 안산 소재의 환경 관련 중소기업 대표와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때 중소기업 대표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신규 환경규제가 많이 있는데 이게 좀 이해하기 어렵고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규제가 이렇게 과도해질 바에는 차라리 문 닫고 임대사업을 하려고 한다 이 정도로 심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 시행이 된다면 그런 부분이 많이 고려가 됐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요즘 사회변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촉진법에서 추진하고 있는 10년 주기로 하는 자원순환 기본계획 수립주기는 5년으로 설정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중소기업중앙회 산하에 제조업인 플라스틱·유리·PVC관 제조조합하고 그다음에 제지원료재활용조합, 가전가구재활용조합 6개 조합에서 추가로 의견을 좀 제시했습니다. 그건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촉진법보다는 기본법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된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원순환사회라는 게 정부·국민·기업 모두 사회구성원 협조를 통해서 달성할 수 있는데 과연 환경부 한 부처의 소관으로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약간 의구심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논의를 하자고 지금 의견을 주셨고, 그다음에 1986년 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 정의를 가지고 이 촉진법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30년이 지난 이런 폐기물에 대한 정의가 과연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기본법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국산업폐자원공제조합 신충식 부이사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신총식** 안녕하세요? 신총식 부이사장입니다.

저는 요약본이 있고 세부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68페이지의 세부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원순환 기본법과 촉진법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촉진법하고 기본법의 큰 차이가 제가 보기에는 촉진법 같은 경우에는 현행 폐기물 관리 체계를 보완해서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고요, 기본법은 폐기물의 개념을 재정의하여 현행 폐기물 관리 체계를 무시하고 폐기물의 최대 이용 위주의 자원순환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물질은 용도 폐기되는 순환자원과 폐기물로 분류되거나 환경보전과 국민의 건강을 최소한 담보하기 위해 현행 폐기물 관리 체계 및 자원순환 이용 체계와 같이 환경적 위해성이 우선 고려된 후 순환자원의 정의가 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폐기물로 출발한 자원순환 프로세스에 근거하는 것과 달리 기본법으로 출발하는 것은 현실과 부합되지 않고 국민 정서에도 크게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결국 기본법은 폐기물의 최대 이용 측면만을 고려할 뿐 자원순환 체계에서 가장 기본인 안전성·환경성을 담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국내 여건에 맞춰 정착된 자원순환 이용 체계를 붕괴시키고 심각한 환경의 질적 저하를 조장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발표가 있었는데 순환자원과 폐기물과의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시면 촉진법에서는 폐기물이 순환자원을 포함하는 걸로 되어 있고 기본법에서는 순환자원 안에 폐기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반되는 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모든 물질을 순환자원으로 포괄 정의하는 것은 폐기물이 사업자의 주관에 따라서 선별조차 되지 않습니다. 특히 유가성이 결여된 경우에도 폐기물에서 제외될 수 있어 폐기물에 불과한 순환자원이 현행 폐기물 관리 체계와 같이 제도권 내에서 통제가 어렵게 되고 국내 폐기물 발생 및 처리 정서와 정면 배치되므로 용도 폐기된 물질 안에서 순환자원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촉진법에서 순환자원의 인정 제도의 경

우 경제성·환경성 등의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해외 사례와 같이 폐기물에 함유된 중금속 및 유해 성분 등의 기준에 따라 폐기물로 관리하여 부적정한 순환자원의 인정을 방지하고 순환자원의 명확한 분류기준 마련으로 순환자원의 질적 가치 확보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순환자원과 폐기물의 명확한 관계 정립이 순환자원의 질을 높이고 국내 자원의 한 축으로서 자리할 수 있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순환자원의 조기 정착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폐촉법과 같이 폐기물 속에 순환자원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에너지재활용 순환자원 포함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3R 정책(물질재활용)의 자원순환 한계를 극복하고 자원순환 체계를 정착시키고자 에너지재활용 정책을 도입한 결과 2012년 기준으로 볼 때 전체 사업장폐기물 76%가 재활용률을 보이고 있고 그중에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들은 전체 90%가 재활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통계자료에서 보듯이 이미 현행법 및 정책에 따라서 물질재활용이 최대한 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2008년 폐자원 에너지 대책으로 4R 정책을 추진하여 폐기물로부터 에너지 회수기반(소각열 포함)을 마련하였고, 2011년 제1차 자원순환 기본계획으로 자원순환 산업을 발전·정착시켜 폐자원의 순환적인 이용 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2년을 기준으로 해서 폐기물로부터 생산된 신재생에너지가 전체 신재생에너지의 68%를 차지하고 있어 국내 재생에너지 확보에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이 2008년도 정부는 폐자원의 물질재활용 한계로 인해 에너지재활용 정책을 도입하여 폐자원 순환이용 체계를 정착시킨 전례가 있으며 이를 통해 폐기물 에너지 활용을 높이고 국내 재생에너지 확보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을 감안할 때 에너지재활용이 배제된 자원순환법 제정은 자원순환 체계를 오히려 퇴보시킬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폐기물은 물질재활용과 에너지재활용으로 대별되고 있고 향후 에너지재활용 범주 및 활용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며 이상적인 순환이용 체계 정립에 에너지재활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에너지 회수기준의 업계 현실을 고려한 설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듯이 왼쪽 편에는 분리·선별이 잘 돼서 양질의 가연성폐기물을 반입받아 에너지 회수하는 것과 오른쪽의 그림에 보는 바와 같이 더 이상 재활용이 불가능한 저질의 혼합폐기물에서 에너지를 회수하여 신재생에너지(스팀, 전기, 온수 등)를 인근의 에너지 사용업체 공급 및 자체 이용을 통해 순환 이용되고 있으며 에너지 회수를 극대화하고자 보일러 개선 및 고효율 보일러 교체 등 업계 자발적으로 사력을 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처분 업계는 반입되는 폐기물의 상태가 고려되지 않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에너지 회수효율이 75%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 민간 소각시설의 경우 연간 860만 Gcal의 에너지를 회수·이용함에도 단순처분으로 취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순환자원의 기준 여부가 된 에너지 회수기준을 향후 정할 때는 업계의 특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설정하고 국내 도입된 기술 수준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회수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섯 번째, 소각·매립 부담금의 부과 대상 제한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편의 배출처별 처리 방법 현황을 도표에서 보면 생활폐기물이 59%가 재활용되고 있고 사업장폐기물이 76%, 건설폐기물이 97%가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이미 현행법 및 정책에 따라 발생폐기물의 자원순환율이 순환가능한게 이상으로 높은 반면에 생활폐기물은 재활용률이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래 표와 같이 산업폐기물 처리 방법별 처리 단가 현황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에서 환경부 고시 내용을 보면 재활용보다는 소각비용이 훨씬 단가가 높은 것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장 일반폐기물에서 시장단가가 재활용이 소각비용에 비해서…… 소각비용이 2배 이상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폐기물에 대한 소각·매립 부담금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

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한상공회의소 자료에 의하면 재활용이 80% 이상이면 순환가능한게로 볼 수 있으며 용도 폐기된 물질임에도 유가물은 전량 재활용 또는 판매하고 남은 소각·매립 물질까지도 그 이상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현행 폐기물부담금, 재활용부과금 이외에 소각·매립 부담금을 추가하는 것은 폐기물 배출자에게 전적으로 부담을 전가시키는 정책입니다. 금번 1월 20일 실시한 온실가스 배출권 제도와 더불어 국내 기업들의 경영난을 가중시킬 뿐더러 원가 상승 등 사업자에게 부담 가중으로 부적정 처리를 조장시키는 역효과만 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부담 감면 및 적절한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재활용과 에너지 회수가 더 이상 불가능한 폐기물, 혼합폐기물 중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 등 현장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동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적절한 제한이 필요하고 재활용률이 낮은 생활폐기물과 같이 반드시 필요한 대상만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각·매립 부담금의 일몰 시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장폐기물의 경우에는 현재 재활용 처리단가가 가장 낮게 형성되어 있어 소각·매립 부담금의 시행 실효에 문제점이 우려되고, 행정규칙 기본법에 따라서 설정된 규제 존속기한의 97%가 3년인 점을 감안해서 볼 때 동 제도의 일몰 시점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진술인의 의견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질의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5분으로 하고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한정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에 위원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에입니다.

지속가능한 사회라고 하는 게 아마 우리 모두의 꿈일 텐데요, 그것을 반영하듯이 오늘 5개 법안이 이번 공청회에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가 가능하다면 이번 공청회를 계기로 여러분들의 의견도 많이 받고 해서 정말로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위

한 제도를 제대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청회에서 보면 기본법이나 촉진법 이 제명보다는 실질적으로 자원순환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다른 해당 운영 범위하고 또 하나는 타법과의 관계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게 기본법이나 또는 촉진법이나 이 얘기가 좀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요거와 관련해서 제가 박준우 교수님께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개 법안 중에서 기본법도 있고 촉진법이란 제명으로 나온 것도 있는데요, 교수님 진술 자료를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관련 모든 법을 통괄하는 법안 제정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면 자원순환 제도를 위해서 현행 제도나 또는 법률 중에서 어떤 부분을 좀 통괄해야지만 이 제대로 된 자원순환 제도로써 갈 수 있겠는지를 좀 진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술인 박준우** 가장 기본적으로는 폐기물과 관련된 폐기물관리법이 기본법이고 그다음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기타의 법률들이 있는데 폐기물관리법은 근본적으로 버려지는 물건으로 인한 어떤 환경이나 인체에 대한 위해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 뒤에 이루어진 법들은 폐기물을 어떻게 하면 새로운 자원으로 이끌어 내느냐에 맞추고 있다 보니까 본질적으로 상충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 상충되는 부분들이 보다 더 환경을 중시하는 환경부 입장하고 그다음에 고용촉진이라든지 경제 쪽을 중시하는 산업이나 경제 부서하고의 이해상반 관계, 엇갈린 부분이 있어서 이게 자원순환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자원이 제대로 순환되도록 촉진도 돼야 되는 동시에 또 전통적으로 이어져 온 환경관리가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면 이 2개의 상충되는 부분을 하나의 어떤 기본 원칙이나 또는 방향하에서 통합하는 것이 필요한데 지금까지는 보면 그렇게 통합하는 그런 근거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자원순환이라는 어떤 기본 명제하에서 그런 것들을 통합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정애 위원** 역시 좀 쉽지 않을 것 같기는 하네요.

**○진술인 박준우** 예.

**○한정애 위원** 김미화 총장님께 제가 좀 여쭙

보겠습니다.

총장님 자료 주신 것 보면 ‘폐기물 종료제도 도입은 필요하다. 그러나 폐기물관리법의 재활용 용도하고 방법·기준과의 관계 설정 부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진술을 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번에 법의, 제정안의 실효성을 위해서라고 보면 구체적으로 현행 폐기물관리법상에서 어떤 식으로 개정의 방향이 나와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진술인 김미화** 지금 현재 폐기물법을 보면 재활용품인데도 불구하고 폐기물로 분류된 부분들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유용하게 잘 사용할 수 있는 재활용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폐기물로 분류되다 보니까 재활용도 못 하고 기타 등등 계속 이 사업자들은 굉장히 비싼 비용을 들여 갖고 처리를 해야 되는, 처분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 이러한 것들은 저는 폐기물 졸업·종료 이런 것들을 통해 갖고 충분히 가능하다, 가능한데 이러한 것들을 말 그대로 시장에 맡겨 두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활용이라는 부분들은 우리 국민들이 다 이렇게 확대를 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안전의 문제, 재활용 종료를 할 때 그러면 어떠한 관점에서, 어떠한 저기가 있게 이런 것들을 충분히 법 속에서 좀 이렇게 갈래를 쳐가지고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료 제도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떤 게……

**○한정애 위원** 그 판단의 기준을 직접적으로 사업자에게 맡기는 것은 조금 그렇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진술인 김미화** 예, 저는 안전성에 대한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정애 위원** 하나만 또 전재경 원장님께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순환자원의 적용 범위에 대해서 정부보다는 사업자에게 책임을 부여할 수 있는 사회협약, 그러니까 자발적인 협약 이런 것들을 좀 주장을 하셨는데요. 법률로 정하지 않고 강제되지 않은 협약이라고 하면, 이게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사회적 협약으로 한다면 하고 하면 순환자원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기 위해

서는 어떠한 선행조건들이 좀 있어야 될까요? 자발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법적으로 강제하지 않으면 상당히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진술인 전재경 현재도 재활용률이 높기 때문에 안전하고 문제가 없는 것들은 재활용 순환자원 코드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양은 적더라도, 그리고 폐기물로 최종 처리해야 될 건 역시 또 그렇게 분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되는 것은 어중간해서 이게 재활용품인지 최종 대상의 처리물인지 불확실한 것들에 대해서는 관련 업계 그리고 또 정부가 마치 노사간에 단체협상을 하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이렇게, 어떻게 가닥을 탈 것인가를 협약을 맺을 수 있는데 이것을 저는 자발적인 협약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정애 위원 결국 정부와 사업자단체와 같이 해서 그러한 것들을 구분해 낼 수 있는 그러한.....

○진술인 전재경 예, 2개의 코드는 분명히 정해야 됩니다. 순환자원 코드와 폐기물 코드는 처음부터 정해 가는데 순환자원 코드가 아마 적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중간에, 현재 우리가 냉장고에 음식을 보관하더라도 그것이 순환자원이 될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냉장고의 것도 폐기물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순환자원으로 보내더라도, 그러니까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졸업시킬 수도 있지만 순환자원으로 가더라도 그게 다시 폐기물로 또다시 퇴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 경계선상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양자가 혹은 삼자가 이렇게 협상을, 협약을 법률적으로,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그런 협약을 맺을 수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한정애 위원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협약으로 하자는 것이네요?

○진술인 전재경 예.

○한정애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한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성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동 위원 권성동 위원입니다.

김미화 총장님 나오셨는데, 자원순환사회연대라는 데는 어떤 단체인가요?

○진술인 김미화 저희 단체는 전국의 여성·환경 시민단체들 180개 단체들이 모여서 네트워크를 하는 단체입니다.

○권성동 위원 그래요?

○진술인 김미화 예, 그래서 환경운동연합도 있고 지역에서 YMCA·YWCA도 있고 그다음은 지역의 주부클럽도 있고 이런 단체들이 다 모여가지고 폐기물.....

○권성동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법안이 5개 나와 있는데 제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파악한 결과 양 법안의 차이점은 크지는 않아요. 기본계획 수립 그다음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의 책무 다 동일합니다, 내용. 말만 조금씩 다를 뿐이고.

그다음에 기본계획 수립 이런 부분도 다 같은데, 그러면 순환자원을 뭘로 정의할 것이냐? 정부하고 최봉홍 의원안은 기본적으로 모든 걸 폐기물로 보고 그중에서 거래 가능하고 유용하고 또 유해성이 없고 이런 부분만 공적인 기관에서, 즉 환경부에서, 정부에서 결정을 하고 한 번 순환자원으로 결정이 되면 계속해서 규제를 안 받고 재활용이 가능하게끔 하는 것 같고요, 그렇지요?

○진술인 김미화 예.

○권성동 위원 그러니까 정부의 규제가 덜한 그런 부분이지요. 맞습니까, 제가 이해한 게?

○진술인 김미화 예, 맞습니다.

○권성동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폐기물을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폐기물 중에서 우리가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을 순환자원으로 사용하려면 환경도 보존하면서 또 순환자원이 된다 해 가지고 환경에, 순환자원으로 인정했는데 이것이 환경에 유해하다 나중에 이렇게 판단이 되면 굉장히 곤란한 문제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을 업체에 신고만으로 맡겨둔다 이것은 좀 위험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진술인 김미화 예, 그렇습니다. 세 분 의원님의 부분들은 시장의 자율성에 따라 갖고 이것은 재활용이 가능하고 재활용이 가능하지 않고 이것은 유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폐기물로 분류를 할

것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셨는데 그러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사례를 들면요, 2008년도에 전 세계가 유류값이 폭등을 했을 때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절연유 속에 PCB가 들어 있습니다. PCB가 들어 있는데 우리나라 법으로는 2ppm 이상은 재활용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름값이 폭등을 하다 보니까, 절연유도 기름이니까 그 기름을 다 빼 갖고 PCB 2ppm 이상 들어가 있는 이 절연유를 가지고 건설현장의 거푸집을 만들고 그래서 그 PCB가 완전 오염이 된 이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물론 많은 분들이 양심적으로 기업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기물 관련해 갖고 유해성에 관련해서는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정말 이렇게 재활용이 잘 되기 위해서는 종료인정제도로 하고 이걸 탁탁 해 주면 됩니다.

○권성동 위원 오케이, 알겠어요. 무슨 취지인지 알겠습니다.

신동학 과장 나왔는데 지금 이게 소각하고 매립하는 경우에 업체에 부담금을 부과하겠다는 게 환경부 방침 아니에요, 그렇지요?

○참고인 신동학 예.

○권성동 위원 그래서 그 부담금을 재원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시책을 펴겠다 이게 환경부 방침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중소기업, 대기업은 그렇다 하지만 중소기업과 한번 논의를 해 봤습니까?

○참고인 신동학 예, 논의를 해 봤고요. 의견을 들어서 중소기업은 감면하는 걸로 지금 외형상 합의를 했습니다.

○권성동 위원 중소기업하고 합의가 됐어요?

○참고인 신동학 예.

○권성동 위원 중소기업에 큰 부담이 안 되겠어요?

○참고인 신동학 예, 현재로서는 부담이 크게 없는 걸로……

○권성동 위원 우리 박준우 교수님 나오셨는데 기본법이나 촉진법이나 이것은 형식적인 문제인데, 그렇잖아요?

○진술인 박준우 예.

○권성동 위원 법안에 중요한 것은 이게 기본법적 성격이냐 촉진법적 성격이냐보다는 내용에 어떤 것을 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렇지요? 어떻습니까?

○진술인 박준우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성동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기본법이…… 나는 기본법과 촉진법의 차이점을 잘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촉진법은 기본적인 의무사항을 규정해 놓고 이것을 법이 목적하는 바를 촉진하기 위해서 어떠한 보완규정을 두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촉진법과 기본법이 달라지는지……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법으로 하는 게 맞아요, 촉진법으로 하는 게 맞습니까?

○진술인 박준우 글썄요, 명칭은 사실 어떻게 가느냐는 그다지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법이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관련된 법을 통합할 수 있는, 전 원장님 말씀하신 협업 또는 거버넌스체제로 갈 수 있는 데 어떤 법이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느냐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그것이 촉진법이나 기본법이나 그 명칭 자체는 이차적인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성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주 권성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 위원 전재경 원장님께 여쭙어 보겠습니다.

정부형 모델도 있고 시장형 모델도 있겠습니까만 그런 것 이전에 자원순환과 폐기물 관리 이 2개의 상호 위상관계라 그럴까요, 호환 배제일 수도 있고 어느 것이 중심이고 어느 게 보조적일 수도 있고 주변적인 것일 수도 있고 이런 문제들을 정리하는 게 우선 기본을 세우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관계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진술인 전재경 순환사회나 자원순환이라는 명칭을 법안에 쓰자면 중심은 ‘자원순환’이나 혹은 ‘순환사회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본법이라는 명칭이 여기 의원님들 안에 붙어 있는데 기본법이라는 명칭을 쓰려면 다른 법률들을 지휘할 수 있어야 되지 나홀로 법으로서는 기본법이 되질 못합니다.

○이인영 위원 그러면 이게 기본법으로 하든 아니면 개별법으로 하든 아니면 정부형 모델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시장형 모델의

장점을 갖다가 보완을 시키는 시장형 모델을 중심으로 해서 정부형 모델의 보완점을 갖다 붙이든 간에 기본적인 것은 그러면 어떤 판단을 중심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자원순환 내지는 순환자원 이것을 어쨌든 중심으로 해 가지고 법체계를 구성하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진술인 전재경 예, 정부중심 모형으로 하자면 현재의 폐기물관리법과 재활용법을 고치는 것이 훨씬 간명하고 혼란이 적습니다. 그러나 이게 순환사회로 나아가려 한다면 좀 못 믿겠더라도 시장이나 공동체를 믿어주고 믿어준 다음에 그 재량을 남용하거나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거기에다가 이행을 강제한다든지 또 위험 부담을 달리 슈퍼펀드 같은 것으로 인수한다든지 하는 그런 대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법 명칭은 순환사회 걸고 기본법 걸고 아주 멋있게 전 국가가, 행정부 시장 공동체 다 함께 나아가갈 것처럼 얘기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정부중심형으로 가면 법 명칭과 내용이 맞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인영 위원 그렇지요. 서로 모순되는……

그래서 그것을 정리하신다면 원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정리해 보실 수 있으세요?

○진술인 전재경 자원순환을 촉진하건 순환사회를 형성하건 간에 저희는 지금 유럽형을 굉장히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형이나 미국형은 시민사회나 시장 쪽에 상당한 신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한다면 정부의 명령·통제는 전가의 보도로 숨겨놓고 우선 공동체, 즉 시민사회와 기업, 시장에 책임을 부여하면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을 한번 따져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기업이나 공동체는 많은 신뢰를 잃었고 시민사회는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그냥 편안한 게 좋습니다. 정부가 그냥 폐기물관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편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 법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한번 신뢰를 측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인영 위원 제가 여쭙어 보고 싶었던 개념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을 쓰셨는데, 시민사회 이런 쪽을, 일반적으로 정부형 모델이 있고 시장형 모델이 있으면 제3영역에서, 제3섹터에서 시민사회형 모델 이런 것들도 있고 그것이 전체 거버넌스 구조를 촉진시키기도 하고 또 매개하기도 하고

그런 역할들을 하는데 조금 다른 개념을 쓰신 것 같아서 조금 설명을 더……

○진술인 전재경 그것은 현재 생활계폐기물 그리고 또 산업계 중심의 지정폐기물 이런 개념이 분류가 되어 있는데 시장은 산업계 쪽입니다. 그리고 생활계폐기물은 제가 말한 시민사회나 공동체 개념입니다. 그 2개가 혼재되어서 그냥 민간 중심으로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는데, 시간관계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인영 위원 그러면 거기서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시민사회영역에서 NGO 같은 경우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술인 전재경 그것은 생활계폐기물 쪽이라고 생각하고 공동체를 대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업계나 협회 이런 것은 시장모형 중심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생활계폐기물보다 문제가 되는 것들은 시장 쪽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여기에서 ‘시장 중심’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이인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이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봉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홍 위원 다섯 분 모두에게 여쭙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 법안은 시급성이 있는 데는 전부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진술인 있음)

전재경 원장님께 여쭙어 보겠습니다.

비용이 많이 든다 그랬는데 환경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의 생활·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국가가 비용을 좀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데 비용 때문에 전체를 흐린다 하는 것은 국민 생활·안전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 점을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목표관리제, 사용촉진, 자원순환 부과, 순환자원거래소 설치·운영 이런 갖가지 문제들이 현재까지 그대로 미뤄졌기 때문에 집행이 되지 않고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의하기 위해서 내놓은 궁여지책입니다.

제가 국회에 처음 들어와 가지고 환경문제를 다루게 된 것도 시장에 맡겨 놓은 쓰레기들이 중국 수출간다 해서 장항항, 군산항에 1000여t이나 쌓여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채산이 맞았는데 나

중에 값이 떨어지니까 화주는 도망가 버리고 그것이 3년간 버티고 있는 바람에 엄청난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그것 처리하는 데 한 2000만 원 정도 정부가 내놨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시장을 시장관계자들과 공동체에게 맡겨두는 것이 좋다 하셨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맡겨 놓을 실정이 됩니까?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술인 전재경 날카로우신 질문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시장의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고 또 단체협약이나 자발적 협약 같은 것을 법적·강제적으로까지 그런 협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는 대안을 말씀드렸는데 누가 하든 비용은 발생합니다.

○최봉홍 위원 맞습니다.

○진술인 전재경 정부가 하든 시장이 하든 공동체가 하든 비용은 발생하는데 시장에 맡길 경우에는 비용 또한 시장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정부가 이렇게 대신 해 주면서 시장에게 재량만 주는 것은 자유와 권리·의무와의 책임에서 서로 상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최봉홍 위원 그러나 환경문제에 있어서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가지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처음 와 가지고 전 국민이 환영하고 있는 무상 수급 문제를 시작할 때에 시장을 빙자한 업자들이 한 사오십 명, 지금도 국회 앞에서 데모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데모를 한 15일 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 폐기물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뭉쳐진 사회단체, 시장을 빙자한 그런 단체들은 전국에 부지기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국민 생활·안전을 위해서, 국민 건강을 위해서는 강력하게 규제를 만들어 놓고 그 대신에 업자들이 요청해 왔을 때는, 환경부가 그렇습니다. ‘최대한도로 감안을 해 가지고 합의를 해라’, 중소기업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중소기업에서 오셨는데 이런 문제도 안을 제시하면 그것을 현지에 맞춰 가지고, 그것이 서로 교역도 되니까요.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 일본하고 미국형은 아까 우리하고 다르다 그랬는데 그 사람들도 안 그렇습니다. 실지 내용은 폐기물이라고 하는 이것을 버려질 물건을 폐기물이라 합니다. 나는 버렸지만 사용자가 없으면 폐기물이 되는 것이고 사용자가 있으면, 그

사람이 가지고 가면 순환자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전부 순환자원으로 묶어버리면 지금 의료폐기물이나 고철이나 화공약품이 포함된 이런 물질들이 사용자가 없어 가지고 안 가져갔을 때, 순환자원으로 해 놔는데, 국민에게 피해를 준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는 누가 책임집니까? 정부가 책임져야 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진술인 전재경 죄송합니다. 제 말씀에나 제 발언 논지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전부 그렇게 순환자원에 맡기자고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미국에서도 폐기물과 순환자원의 문제를 두고 다툼이 많아서 연방대법원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순환자원과 폐기물이 서로 독립해서 개념 설정이 가능하게 경로를 열었고요. 일본은 우리처럼 이렇게 순환형 사회형성 추진 기본법을 마련했습니다만 일본의 기본법에서는 우리와 같은 규제장치들이 없고 정책기본법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시면 좋겠고요.

이 자원순환거래소라든가 정부의 인정제 이런 것에 관해서 법률에서는 이 차이가 명확합니다. 이것은 순환자원코드고 이것은 폐기물코드라고 해서 사전 공시를 할 것인지 아니면 행정처분으로 건건이 이렇게 정부가 개입할 것인지 그 차이가 제가 말씀드리는 재량의 문제고 또 비용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최봉홍 위원 제가 생각해도 그런 문제에 있어 가지고 미국이나 유럽에서 하고 있는 것이 실지 내용을 보면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슈퍼펀드 이러한 문제들 이것도 우리나라에서는.....

.....

적절치 않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슈퍼펀드 같은 경우에도 미국 같은 데는 토양에 대해서 하지, 우리도 토양에 대해서는 화평법이라고 환경부가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진술인 전재경 슈퍼펀드의 출발점은 러브 캐널(Love Canal), 러브운하에 묻힌 그 폐기물 때문에 슈퍼펀드가 출발했습니다.

○최봉홍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최봉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영 위원** 정부에서 나오신 홍정기 국장님!

○**참고인 홍정기** 예, 자원순환국장입니다.

○**양창영 위원** 이번 정부 제정안에서 순환자원 품질표지인증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를 통해서 정부가 민간 영역에 많이 개입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순환자원품질표지제도의 도입 취지 그리고 그 장단점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홍정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논의하신 것 중에 가장 쟁점 되는 것이 폐기물하고 순환자원인데요. 저희 정부안에서는 일단 폐기물 중에서 경제성과 환경성이 담보되는 부분에 한해서 순환자원으로 인정을 하는 제도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자원으로 인정이 되면 이미 그것은 폐기물에서 배제가 되기 때문에 폐기물관리법상의 여러 가지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순환자원으로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순환자원이 사회에서 많이 생성이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순환자원들이 많이 수요처가 발굴이 되어서 그것들이 소비가 되고 사용이 되었을 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은 순환자원에 대해서 일정 품질을 갖춘 것들에 대해서 국가에서 공적으로 어떤 인증해 주는 표지인증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구매를 촉진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도입하고 그래서 순환자원의 생산과 소비를 원활하게 이루어 주기 위해서 품질표지인증제도를 두고 있고 이 제도 자체도 사실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임의규정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필요에 의해서 품질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과도하게 규제를 한다거나 개입을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양창영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전재경 원장님 진술서에 보니까 이번에 올라온 제정법이 안전과 책임을 얻는 대신에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또 행정비용과 거래비용을 증가시킨다는 얘기가 있던데 알고 계시지요?

○**참고인 홍정기** 예.

○**양창영 위원** 조금 전에 질의하신 존경하는 최봉홍 의원님과 정부 제정안에는 비교적 안전을 선택했다고 판단되는데 행정·거래 비용이 너무 크게 낭비된다면 이것 또한 무시할 수는 없는 겁니다. 보는 관점의 차이겠지만 사실상 본 위원은 행정비용과 거래비용 그리고 경쟁력보다는 국민의 안전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안전을 전제하고 모든 사회경제활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지요.

○**참고인 홍정기** 저희들이 폐기물 종료 인정제라든가 사업장성과관리제도를 법안을 설계할 때도 환경 안전하고 여러 가지 행정비용, 경제적인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순환자원인정제도의 경우에도 순환자원 인정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전체적으로 업체당 한 20만 원 정도 발생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산을 했고요. 그에 비해서 사회적·환경적인 편익은 150억에서 한 300억까지도 발생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규제에 의한 비용 측면에서 또 과도한 행정비용을 발생한다고 보지 않고요.

다만 저희들이 순환자원을 확대하고 자원순환사회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폐기물에서 제외함으로써 그것이 진정한 순환자원으로서의 사회적인 대우와 가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있어서 원천적으로 저희가 순환자원이라는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폐기물하고 독립된 체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일단 폐기물에 들어와 있지만 그중에서 환경적인 요인 또 경제성·유용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일정 부분 이것들을 우리가 순환자원으로 인정하는 그런 절차를 통해서 갈 것이냐 하는 정책적인 판단의 문제가 되겠는데요, 여러 가지 사회적 여건들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양창영 위원** 시간이 없어서, 우리 전재경 원장님께서 진술서에 언급하신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정부 주도의 규제모형을 탈피하여 시장에 순환자원의 생성과 거래에 대한 자유와 재량을 부여하자고 하셨고 또 재량을 남용하거나 책무를 불이행할 경우에 책임을 추궁하자는 자발적인 협약 도입과 함께 안전관리를 확보하고자 미국식 신탁



기금체계 도입을 언급하셨던데 폐기물과 순환자원의 인정을 원장님께서 말하신 것처럼 자발적인 협약 등을 통해서 관리하는 사례와 또 미국식 신탁기금체계를 활용한 폐기물을 관리하는 사례가 구체적으로 해외에 있었는지, 또한 신탁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업의 신탁기금 관련 부담은 가중되지만 안전관리를 담보할 수 없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전재경** 슈퍼펀드에 대해서는 현재 지난 연말에 제정된 환경오염피해 구제 및 책임에 관한 법률에 이미 그 단서가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법은 현재 환경오염 피해에 중점이 두어져 있지만 폐기물을 관리를 잘못하거나 방치해서 그것이 오염 물질이 되었을 경우에도 하위 법령의 요건 여하에 따라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슈퍼펀드가 그렇게 먼 나라의 이야기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자발적인 협약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나라 환경법의 경우에도 국립공원의 자연자원 채취와 관련해서 자연공원법과 자연환경보전법이 지역 주민들과 공원관리청 사이에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사례가 있고 다음에 수산자원 관리에서도 같은 사례들을 이미 도입을 했습니다.

외국에 비교법적으로 보면 영국에서 생활폐기물에 관해서 명칭은 자발적 협약이 아니지만 그 지역사회와 관할 행정청이 이렇게 서로 협약을 맺는 그런 제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저는 앞서서도 안전 문제 그다음에 행정비용의 문제에 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안전을 중시한다고 해서, 행정비용과 안전이 서로 길한 관계에 다소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비용을 줄인다고 해서 그것이 안전이 망가진다는 그런 논리 구조는 존재하지 않고 모든 입법자나 전문가들은 안전과 비용 이 두 가지를 다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창영 위원** 답변 시간을 주느라고, 내가 한 1분만……

○**위원장 김영주** 예, 1분 더 드리겠습니다.

○**양창영 위원** 구체적인 해외의 적용 사례가 없는 그런 현실을 고려할 때, 제가 알기로는 구체적인 해외 적용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원장님의 주장은 제가 보기에는 좀 시가지조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또 환경과 관련된

문제, 특히 폐기물의 경우는 사고가 발생한 후에 책임을 추궁하기에는 피해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해서 사전에 예방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또 국민의 안전을 우선시하고 안전한 폐기물 관리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또 이를 바탕으로 해서 유용한 물질을 최대한 순환 이용하도록 합리적인 방향으로 법안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양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박준우 교수님!

○**진술인 박준우** 예.

○**김용남 위원** 지금 법안이 5개나 되어서 사실은 5개의 법안을 비교 검토하기가 매우 까다로운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보니까 정부안이나 최봉홍 의원님 안은 기존 폐기물 개념을 좀 활용을 해서 한 것으로 보이고 지금 기본법으로 발의된 법안들은 이윤석 의원님 대표발의한 안도 보면 부산물이라는 개념을 집어넣어서 기본적으로 사람의 생활 또 사업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을 부산물이라는 개념으로 넣고 거기서 순환자원이 아닌 것을 폐기물로 빼는 기본 개념 형태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폐기물은 이게 처리 절차가 정해져 있고 그에 따른 처리비용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이윤석 의원 대표발의안이나 다른 기본법으로 발의하는 내용을 보면 이게 지금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부산물이라는 것 중에 재활용하려면 못할 건 없잖아요, 어떤 방식이 되었던. 그런데 이게 재사용, 재활용이 가능한 순환자원이라는 이유로 폐기물 처리가 늦어지거나 아니면 폐기물 처리비용을 회피하기 위해서 고의 지연될 우려가 있지 않나요? 그런 염려가 조금 있어 보이는데 어떠신가요, 교수님 보시기에?

○**진술인 박준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실 환경으로 인한 피해는 사전적으로 예방할 때 들어간 비용하고 사후에 교정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은 엄청난 차이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모든 환경오염의 근원은 폐기물에 있고 폐기물을 다 관리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기 전에 가능하면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 폐기물 관리의 기본적인 정신이라고 저는 보여줍니다.

그런데 부산물, 사실 폐기물로 옛날에는 다 버려지던 것, 그런데 다 가치가 있기 때문에 다시 썼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부산물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현대적인 용어로 의미를 하면 그게 폐기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중에는 유용성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지만 아무리 유용성 있는 물건이라도 일단 버려지면 어떤 형태로든지 환경에 피해를 미치게 됩니다.

그때 그것을 다시 회수를 해 가지고 환경에 위해성이 없어질 때는 그게 자원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것이지만 그 전 단계부터, 폐기물과 순환자원을 태어날 때부터 구분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폐기물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환경적인 피해를 예방한다는 취지를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용남 위원 감사합니다.

전재경 원장님, 발제자 간의 상호 토론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라는 조금 전의 제 질의 내용 들으셨지요?

○진솔인 전재경 예.

○김용남 위원 이것에 대해서 정부가 너무 과도하게 개입한다, 시장에 맡겨두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방금 제가 박준우 교수님한테 했던 그런 우려가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순환자원으로서, 기존의 폐기물로서 발생 순간부터 비용이 들어가던 것이 지금 순환자원이라는 이유로 처리비용을 면제받거나 아니면 적어도 처리 시기가 많이 늦어지는 염려가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견 주시지요.

○진솔인 전재경 거기에 대해서도 저는 이견이 없습니다. 환경법상의 제1의 원칙이 사전배려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견이 없고, 제가 앞에서 죽 드린 말씀은 물량으로 봐서는 순환자원이 많지만 종류로 봐서는 현재 폐기물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100가지를 폐기물 코드라고 정해 놓는다면 안전에 문제가 없이 재활용할 수 있는 코드는 아마 한 다섯 개 내외 정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미 재활용에서 검증이 되었고 안전에 문제없는 것들까지 폐기물로 낙인찍지 말자는 주장이지 그런 안전을 해치면서까지도 그냥

이렇게 재량을 주자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 법률에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권리를 남용할 경우에는 항상 거기에 대한 징계가 따릅니다. 저는 그런 징계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났는데, 한정에 위원님하고 최봉홍 위원님께서 간단하게 추가 보충질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한정에 위원님!

○한정애 위원 예, 아주 짧게……

○위원장 김영주 예, 3분 드리겠습니다.

○한정애 위원 짧게 흥정기 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릴게요.

소각·매립 부담금 제도는 소각과 매립을 좀 줄여서 쓰레기 제로화 추구하자는 취지인 거 같아요. 그런데 정부안 이렇게 보면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부담금, 정부안 21조에 보면 감면대상 제1호에서 폐기물 매립지를 직접 조성하여 매립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잠깐 우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본력이 좀 있는 대기업은 자체적으로 매립지를 마련하거나 매입해서 부담금을 면제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또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걸 또 대기업 봐주기식 입법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문제제기가 있어서 이것에 대한 환경부 견해하고 그리고 대안 같은 것은 있으신지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인 흥정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분부담금제도를 설계하고 관련 이해 당사자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처분 부담금은 법에 나와 있는 문구처럼 재활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소각이나 매립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부담금을 부과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재활용이 더 이상 안 되거나 불가능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부과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저희들이 소각을 하더라도 열 회수를 일정 기준 이상 하는 경우 그런 경우도 당연히 일종의 그것도 저희들 순환이용의 한 방법이 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매립의 경우에도 스스로 매립장을 조성했다고 그래서 그냥 자연히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이유는 내가 어떤 폐기물이 발생이 돼서 그걸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어서 어디다 재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 수요에 비해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더 많은 경우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스스로 자기가 비용을 부담을 해서 우선 매립장을 조성을 해서 여기다가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거는 사후에 매립장에 보관해 놔다가 수요가 더 늘어났을 때 그거를 재활용을 하기 위한 방법, 또 현재는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기술 개발을 통해서 새로운 재활용이 가능하고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자가매립을 하는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 처분부담금을 감면……

○한정애 위원 그러면 그것은 매립이라고 표현하기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아닌가요?

○참고인 홍정기 그런데 그거를……

○한정애 위원 매립이라고 하면 물어 버리는 걸 말하는데……

○참고인 홍정기 위원님, 일단 그거를 보관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보관은 엄격한 보관 기준이 있고 보관 일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자기가 스스로 비용을, 매립장에 설치되는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합당한 매립장을 설치하고 거기다 일단 매립을 해 놓고 사후에 재활용을 하는 그런 방법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감면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한정애 위원 일단 이 문제는 소위에서 좀 더 논의를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인 홍정기 그거는 꼭 뭐 대기업 특혜하고는 관련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봉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홍 위원 몇 가지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실제 이 법안 문제는 다섯 분이 내놓았는데 이 법 자체가 그 뒤에 지원해 주는 팀들의 밥그릇 싸움입니다. 다 아시겠지만도 실제 환경단체라 하면서 이리저리 다니며, 저도 이 문제를 가지고 2년째 다루어 오고 있는데 거기에 좀 휘둘리지 마시고 우리나라 환경과 국민부터 먼저 좀 생각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깨우쳐 주시고 지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서 신총식 부이사장, 아까 에너지 재활

용 문제……

○진술인 신총식 예.

○최봉홍 위원 에너지 재활용하는 거는 순환자원으로 들어가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진술인 신총식 고맙습니다.

○최봉홍 위원 그리고 환경부하고 산업부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이서 거느리고 있는 국민들 의견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합의를 내 이루어지는 그런 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고인 신동학 알겠습니다.

○참고인 홍정기 알겠습니다.

○최봉홍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진술인 전재경 위원장님께,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명예훼손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작년 까지 정부출연연구기관 사람으로 이 환경법을 연구해 왔지 제 뒤에 무슨 단체나 배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최봉홍 위원 아닙니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진술인 전재경 어떻게 5명이 배후에 무슨 저기……

○최봉홍 위원 아닙니다. 저도 그 얘기는……

○진술인 전재경 있는 단체로부터 자유로워지라니…… 제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최봉홍 위원 아닙니다. 제가 왜……

○진술인 전재경 그런 말을 속기록에 남기시면 제가 여기 뭐 하러 나왔습니까?

○최봉홍 위원 그거에 대해서 취소를 드리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의논을 하다가 보니까 오시는 분들 의견이 그렇게 와 가지고 의원님들도 그러고 온갖 얘기가 튀어나오니까 저도 좀 답답해 가지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진술인 전재경 그러나 그 말씀은 빼 주십시오.

○최봉홍 위원 예, 속기록에 삭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영주 최봉홍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것 취소하신다니까 속기사님께서 그 부분은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것으로 진술인과 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중에 이자스민 위원께서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섯 분의 진술인과 두 분의 참고인들께서 진술하신 내용과 위원님들과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시된 여러 의견들은 우리 위원회가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안 등 관련 법안들을 심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셔서 유익한 진술 해 주시고 진지하게 답변해 주신 진술인과 참고인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끝까지 자리를 함께하고 계신 김용남 위원님, 양창영 위원님, 최봉홍 위원님, 이인영 위원님, 한정애 위원님, 남아 계신 분들은 속기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충덕 수석전문위원과 보좌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산회)

○출석 위원(11인)

권성동	김영주	김용남	민현주
양창영	이석현	이인영	이자스민
주영순	최봉홍	한정애	

○청가 위원(1인)

장하나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전문위원	김양건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환경부

장차기획조정실장	윤성규
환경정책실장	정연만
물환경정책국장	이재현
자연보전국장	백규석
자원순환국장	김영훈
기후대기정책관	이민호
상하수도정책관	홍정기
환경정책관	최홍진
	정희석
	박광석

환경보건정책관	나정균
감사관	이경용
고용노동부	
장차기획조정실장	이기권
고용정책실장	고영선
노동정책실장	한창훈
정책기획관	이재홍
고령사회인력정책관	권영순
직업능력정책국장	김종열
근로기준정책관	문기섭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나영돈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정지원
	안경덕
	박종길

○출석 진술인

김미화(자원순환사회연대 사무총장)  
 박준우(상명대학교 명예교수)  
 신충식(한국산업폐자원공제조합 부이사장)  
 전재경(사회자본연구원장)  
 현준(중소기업중앙회 창조경제부장)

○출석 참고인

신동학(산업통상자원부 기후변화산업환경과장)  
 홍정기(환경부 자원순환국장)

【보고사항】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장하나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2015. 2. 10

○의안 회부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우윤근 의원 대표발의)

(2015. 2. 13 우윤근·신정훈·박광온·이춘석·주승용·홍종학·서영교·강창일·백재현·오영식·김영록·안규백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우윤근 의원 대표발의)

(2015. 2. 13 우윤근·신정훈·박광온·이춘석·주승용·홍종학·서영교·강창일·백재현·오영식·김영록·안규백 의원 발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 의원 대표발의)

(2015. 2. 13 박민수·이개호·김우남·강창일·신경민·부좌현·박남춘·이춘석·이종배·양승조 의원 발의)

이상 3건 2월 16일 회부됨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2015. 2. 24 이찬열 · 백재현 · 김윤덕 · 전순옥 ·  
이개호 · 조정식 · 양승조 · 김경협 · 김광진 ·  
강동원 의원 발의)

2월 25일 회부됨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 의원 대표발의)

(2015. 2. 25 김광진 · 김민기 · 민홍철 · 박남춘 ·  
박영선 · 배재정 · 부좌현 · 우원식 · 이해찬 ·  
전순옥 · 최동익 의원 발의)

2월 26일 회부됨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한성 의원 대표  
발의)

(2015. 2. 26 이한성 · 류지영 · 박영선 · 김한표 ·  
정희수 · 이상일 · 조명철 · 경대수 · 안홍준 ·  
이자스민 의원 발의)

2월 27일 회부됨